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보고서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02. 12. 24

주관연구기관명 한양대학교
연구책임자 오영근(한양대 법대 교수)

목 차

I. 서 론	1
II. 소년사법절차의 개관	
1.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소년	4
2. 소년보호사건절차	4
3. 소년형사사건절차	6
III. 소년사법절차에서 어린이·소년의 인권침해문제	
1. 대상소년의 문제점	7
(1) 연령의 문제점	7
(2) 우범소년의 배제여부	8
2. 경찰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10
3. 검찰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11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	11
(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13
4. 법원의 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14
(1) 적법절차의 문제점	14
(2) 적법절차실현의 구체적 구현방안	17
(3) 조사제도의 문제점	21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제도의 문제점	22
(5) 부정기형의 문제점	24
(6) 미결구금 및 형사보상의 문제점	25
5. 보호처분 및 형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	27
(1) 민간시설위탁처분의 문제점	27
(2) 소년원수용처분의 문제점	27

(3) 가석방, 가퇴원의 문제점	28
(4) 보호처분과 상습성인정자료의 문제	30

IV. 소년원생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사례

1. 설문조사 및 분석의 내용과 방식	31
(1) 응답자의 연령	32
(2) 응답자의 부모에 대한 태도	32
(3) 응답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34
2.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사례	37
(1) 일반적 사항	37
(2) 인권침해의 유형	38
3. 검찰조사 단계에서 인권침해 사례	40
(1) 일반적 사항	40
(2) 인권침해의 유형	41
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서 인권침해의 유형	43
(1) 일반적 사항	43
(2) 인권침해유형	44
5.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인권침해유형	45
(1) 일반적 사항	45
(2) 인권침해유형	46
6. 재판단계에서의 인권침해유형	49
(1) 일반적 사항	49
(2) 인권침해유형	50
7. 보호관찰에서의 인권침해유형	52
(1) 일반적 사항	52
(2) 인권침해유형	53
8. 소년원에서의 인권침해유형	55
(1) 일반적 사항	55

(2) 인권침해유형	58
9. 소년사법절차 이후단계에서의 인권침해	61
10. 설문결과의 종합정리	62
V. 결 어	63
참고문헌	67
부록(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의식조사)	72

표목차

< 표 1 > 응답자의 연령
< 표 2 > 응답자의 입원전 부모와의 생활관계
< 표 3 > 부모와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 표 4 > 부모님에 대한 불만
< 표 5 > 부모로부터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 표 6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 표 7 >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
< 표 8 > 학교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 유무
< 표 9 > 학교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
< 표 10 > 학교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 표 11 >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계기
< 표 12 > 경찰조사에 대한 만족도
< 표 13 > 경찰조사에 대한 불만이유
< 표 14 >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의 여부
< 표 15 > 경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 표 16 > 경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 표 17 > 검찰청조사에 대한 만족도

- < 표 18 > 검찰조사에 대한 불만의 이유
- < 표 19 > 검찰청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 여부
- < 표 20 > 검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
- < 표 21 > 검찰조사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 표 22 >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은 경험 여부
- < 표 23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한 만족여부
- < 표 24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한 불만족 이유
- < 표 25 > 선도위원들에게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여부
- < 표 26 > 선도위원들에게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
- < 표 27 > 선도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 표 28 >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험 유무
- < 표 29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 < 표 30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대한 만족도
- < 표 31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만이유
- < 표 32 >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대한 불만족 이유
- < 표 33 >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의 여부
- < 표 34 >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
- < 표 35 > 소년분류심사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 표 36 > 심리가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 < 표 37 > 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
- < 표 38 >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이유
- < 표 39 >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 여부
- < 표 40 > 재판과정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
- < 표 41 > 판사나 법원직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 표 42 >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 여부
- < 표 43 > 보호관찰기간
- < 표 44 > 보호관찰에 대한 만족도
- < 표 45 > 보호관찰에 불만족인 이유
- < 표 46 > 보호관찰 중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여부
- < 표 47 >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
- < 표 47 > 보호관찰직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 < 표 48 > 소년원수용기간
- < 표 49 > 소년원생활에 대한 만족도
- < 표 50 > 소년원생활에 대한 불만의 이유

- < 표 51 >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 < 표 52 >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에 대한 만족도
- < 표 53 > 직업교육에 불만인 이유
- < 표 54 >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에 불만인 이유
- < 표 55 > 소년원에서의 활동 중 가장 좋아하는 활동
- < 표 56 > 소년원생활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 < 표 57 > 소년원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 여부
- < 표 58 >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
- < 표 59 > 소년원에 하고 싶은 말
- < 표 60 > 사회로 나아갔을 때에 걱정되는 문제
- < 표 61 > 사회에서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
- < 표 62 > 사회에 나아갔을 때 어른들에게 바라는 사항

소년사법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吳 英 根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서 론

서구에서 ‘소년비행’(juvenile delinquency)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약 200년전 부터의 일이다¹⁾. 소년비행이라는 용어가 200년전부터 비로소 널리 쓰이게 된 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외적인 이유로서, 이때부터 소년비행이라는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²⁾. 또 하나는 사고방식의 변화로서 소년비행을 성인범죄와는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 때부터 싹텄기 때문이다.

소년비행에 대한 사고의 변화란 소년들은 좋은 나쁜든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보는 것이다. 즉 소년들은 진흙과 같아서 원하는 형태로

1) 최초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816년 영국 런던에서 나온 “대도시에서 폭발적인 소년 비행증가의 원인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보고서”(Report of the Committee for Investigating the Causes of the Alarming Increase of Juvenile Delinquency in the Metropolis)에서 었다. 곧이어 1819년 미국 뉴욕시에서 “비행소년 교화협회”(Society for the Reformation of Juvenile Delinquents)가 설립되면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후 소년비행이라는 용어는 급속히 퍼지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비행 내지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불량소년(black-guard children), 말 안듣는 소년(stubborn children), 가난한 떠돌이 소년(poor vagrant children) 등의 용어나 단순히 소년범죄인(young criminals)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2) 이에 대한 상세는, 오영근, “소년범 사법처리절차의 변천과정”, 현대법학의 이론(이명구박 사회갑기념논문집) 제3권, 613면 이하; 서구에서 소년범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사회적 원인을 분석한 문헌으로서 Louise I. Shelley, Crime and Moderniza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141 - 142 면; Howard Zehr, Crime and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Totowa : Rowman and Littlefield, 1976; Theodore N. Ferdinand, "Juvenile Delinquency or Juvenile Justice : Which Came First?", Criminology 27(1), February, 1989, 84면 등 참조.

만들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성인은 굳은 진흙과 같아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전의 사고는 사람이란 대체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 즉 그들은 있는 그대로일 뿐이고 그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새로운 사고는 성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들은 아직은 완전히 굳어진(fixed)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기에 관여한다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선한 사람들 내지 준법을 하는 시민들이 조기에 그리고 적극적으로 소년들의 삶에 관여하여 이들이 범죄인이 될 위험으로부터 구출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소년이 어리면 어릴수록 용이하다고 생각되었다. ‘소년비행’라는 새로운 용어도 소년들은 변화가능하다는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³⁾. 즉 ‘young criminal’이라는 용어가 소년범들에 대해 형벌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개념임에 비해, ‘juvenile delinquent’라는 용어는 소년이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노력으로써 대응해야 한다는 개념이다⁴⁾.

한편 소년사법의 목적이 소년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들을 개선, 교육하는 것이라면, 소년사법절차는 성인사법절차에서와는 달리 국친주의에 입각하여야 한다는 입장이 받아들여졌다. 국친주의란 국가가 자애로운 부모처럼 비행소년이나 범죄소년을 교육, 개선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거의 모든 문명국가는 국친주의에 입각하여 소년사법절차를 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⁵⁾.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국가가 비행소년을 대한다고 하는 국친주의가 표방하는 그대로 소년사법이 운영된다면 범죄 및 비행소년의 개선, 교육에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 대해 가지는 교육권은 일반인들이 그 자녀에 대해 가지는 교육권 보다 훨씬 그 범위가 넓다. 부모는 자녀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외형상 그것이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가혹해 보이더라도 그것이 중요심에서가 아니라 사랑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자녀에 대해 사랑이 없고 중요심만을 가질 수 있는 일반인들에 비해 부모의 교육권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친주의에 따른 소년사법은 당사자주의 대신 직권주의의 채용, 공개재판주의 대신 비밀재판주의의 허용, 변호권에 대한 제한,

3) ‘delinquent’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도달해야 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소년 비행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소년이 행한 것을 범죄로 파악하기 보다는, 비행소년을 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4) 서구에서 소년개념의 유래를 분석해 놓은 책으로서 Philippe Aries, *Centuries of Childhood*, New York : Knopf, 1962.

5) 조복진, “소년사법의 역사와 철학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4호, 2002, 322면 이하.

전문증거의 채용, 적법절차의 완화, 엄격한 실정법적 근거의 불요, 보호처분의 도입, 형벌의 완화 등 성인형사사법과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경찰, 검찰, 법원, 집행기관 등은 엄격한 법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고 비교적 자유롭게 소년을 처우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 및 비행소년의 개선,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국친주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일반 사회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국가는 범죄 및 비행소년에 대해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만큼의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친주의가 갖는 이상과 현실의 간격 사이에서 소년의 개선,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범죄 및 비행소년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소년사법절차에서도 성인사법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적법절차(due process)를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생기게 되었다⁶⁾.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절차 전반에 걸쳐서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소년사법절차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형사사법기관에의 종사자들이 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친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서 법 자체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이 연구에서는 개별적인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 원인이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인 지적을 함으로써 후속연구들에 대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먼저 소년사법절차 전반을 개관하고, 수사, 재판, 형집행의 단계별로 인권침해의 위험성의 유형과 그 개선방안을 찾기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국내외의 단행본, 논문, 통계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는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년사법제도나 실무들을 비교하여 살펴보고 우리제도나 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비교법적 연구방법도 사용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소년사법에서의 인권침해의 실태와 유형을 구체적으로

6) 조준현, "소년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관한 소고", 소년보호연구, 창간호, 1999, 285-294. 한편 최근 독일에서는 소년사법도 예방, 개선, 교육 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인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예방이나 응보등을 통한 법익보호기능도 강조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진국, "독일 소년형법의 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3호(2002년 9/10월호), 40면 이하.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아직 지배적인 것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과 춘천의 소년원생들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 정리하는 실증적 연구방법도 사용하기로 한다.

II. 소년사법절차의 개관

1.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소년

소년법 제4조는 소년사법절차의 대상으로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규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이란 죄를 범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제1항 제1호)을,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이상 14세미만의 소년(제1항 제2호)를 말한다. 우범소년이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제1항 제3호)을 말한다.

이들을 크게 범죄소년과 비행소년으로 둘로 나눌 수 있다.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 불가능하고 보호처분만이 가능하지만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중 어느 하나를 과할 수 있다.

2. 소년보호사건절차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절차는 경찰서장 등에 의해 개시된다. 즉, 소년법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에 대해 경찰서장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제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범죄소년을 검거한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범죄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것인가 형사처분을 할 것인가를 최초로 결정하는 것은 검사이다. 이를 검사선의주의라고 한다. 다만, 이에는 다음과 같은 약간의 제한이 있다. 첫째, 검사는 소년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법원에 기소할 수 없고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한다(제49조 제1항). 이러한 사건을 검사가 형사법원에 기소한 경우 형사법원은 소년사건이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한다(제50조). 둘째, 검사가 소년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였으나 소년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이러한 예외들이 인정되지 않는 때에는 검사의 선택에 따라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행해진다.

보호사건에서 소년을 구속할 수 없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을 소환하거나 동행영장을 발부하여 동행하거나(제13조), 소년법 제18조의 임시조치(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는 것, 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것)를 취할 수 있다. 소년을 동행한 때에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하여야 하고(제18조 제2항),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귀가조치등을 취해야 한다. 보호자위탁, 병원·요양소위탁기간은 3월을, 소년분류심사원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다만,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제17조).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심리를 개시한 경우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제24조).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9조).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제12조).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제29조 제1항).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제32조 제1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 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 병원,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을 한다. 단기보호관찰처분 또는 보호관찰처분시 16세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제32조 제3항).

3. 소년형사사건절차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특칙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제48조 제1항).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제55조). 법원은 조사관에게 그 필요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위촉하거나(제56조), 일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에 판결전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제57조).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고,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제58조).

소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할 경우에는 형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소년법 제59조 이하의 특칙이 적용된다. 즉, 죄를 범할 때에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고(제59조). 18세미만인 소년에 대하여는 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환형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제62조).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감경을 할 수 있다(제60조 제2항).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60조 제1항).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내에 특히 분계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중에 23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제63조).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무기형에는 5년, 15년의 유기형에는 3년,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1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제65조).

III. 소년사법절차에서 어린이·소년의 인권침해문제

1. 대상소년의 문제점

(1) 연령의 문제점

1) 촉법소년의 배제 여부

현재 소년법에 의하면 12세 이상 14세만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도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우범소년에 의한 비행은 제외한 소년범죄의 발생건수를 보면 2000년도에 143,643명, 1999년도에 143,155명, 1998년도에 148,558명 등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형법범중 약 6.2~6.8%에 해당하는 것이다. 2000년의 경우 전체 소년범죄자의 연령을 나이별로 보면, 14세 미만이 1,567명, 14세가 11,818명, 15세가 19,582명, 16세가 23,739명, 17세가 26,928명, 18세가 28,808명, 19세가 31,20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전체 소년범 중 12, 3세의 촉법소년의 비율은 1.09% 정도이다.

<표 1> 2000년 소년범죄자의 연령

인원 \ 연령	14세 미만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N (312)	1,567	11,818	19,582	23,739	26,928	28,808	31,201
% (100)	1.09	8.23	13.63	16.53	18.75	20.06	21.72

그런데 12세 이상 14세 미만으로서 죄를 범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순수한 행정법상의 복지처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보호처분을 복지적 처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촉법소년의 개념을 인정하여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보호처분을 형사제재의 일종으로 이해하여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의 개념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책임무능력자에 대해 형벌을 과할 수는 없어도 보안처분은 과할 수 있듯이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은 있으

므로 이들을 개선, 교육하여 이들이 재범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책임무능력자이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을 과할 수 있듯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헌법에 반한다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촉법소년의 개념을 인정하여도 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2) 연령산정기준시기의 문제점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년사건의 연령은 심판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심판시에 12세 이상 20세 미만이어야 한다.

따라서 심리 중 대상소년이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심리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심리불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소년심판규칙 제42조), 보호처분의 계속중 본인이 처분당시 12세 미만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년부판사는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제38조 제2항). 문제는 심리개시결정 이전에 소년이 12세 미만이었으나 심리개시 이후 12세가 넘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시점은 재판사이므로 심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⁷⁾가 있다. 그러나 소년법의 취지는 범행당시 12세 미만의 소년은 일체의 사법절차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심리를 종결해야 해야 할 것이다.

보호처분의 심판시에 20세 이상의 자는 소년시에 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심리중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되면 형사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제51조). 판례도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하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이는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심판시 즉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⁸⁾. 보호처분은 과거의 범행에 대한 응보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고 소년의 장래의 재범위험성을 치료, 개선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소년의 연령을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⁹⁾도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심리의 진행 여부에 따라 보호처분이 과해질 수도 있고, 형사처분이 과해질 수도 있게 되는 문제점이

7)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246면.

8)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393 판결; 대법원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704 판결.

9) 최병각, “소년심판대상의 연령기준”,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0호, 24면 이하.

있다. 따라서 보호처분의 부과여부는 보호처분시가 아닌 범죄행위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2) 우범소년의 배제여부

1) 문제의 소재

우범소년이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제4조 제1항 제3호)을 말한다¹⁰⁾. 우범소년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 등 행위가 없이도 성격이나 환경 등 행위자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우범소년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들도 가정에서 이탈,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의 교제 등과 같이 성인에게서는 문제되지 않는 지위비행(status offences)에 불과하다¹¹⁾.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의 일종이고 형사제재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원리들이 우범소년에도 적용된다면, 우범이라는 개념은 형법의 일반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심정형법배제원칙, 행위책임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과할 것이 아니라 복지적 행정처분을 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1988년의 소년법개정을 둘러싸고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을 소년법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¹²⁾.

10) 1958년의 소년법은 우범소년을 ‘가정의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이라고 규정하였고, 1963년의 개정소년법은 현행법과 같이 우범소년을 규정하였다. 1958년의 소년법에 비해 1963년의 소년법의 우범개념이 더 넓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1963년의 소년법은 포괄적인 규정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11) 우범소년의 소년법상의 문제점과 기능에 대해서는, 송광섭/점승헌, “우범소년의 우범사유와 우범성”,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수운이한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0, 485면; 荒木伸怡, “虞犯の概念とその機能”, 강원법학, 제3권, 1989, 172면 이하.

12) 우범소년의 처리실태에 대해서는, 김찬돈, “우범소년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처리실태”, 재판과 판례, 제7집, 1998, 627면 이하; 신진규, “우범소년의 처리실태와 선도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5집, 1987, 162면.

2) 보호처분폐지론

이 견해는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복지적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 견해는 보호처분에 의한 낙인효과, 소년원등 시설에 수용될 경우 악풍감염의 우려, 우범사유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자의적 처리의 위험성,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실적 미미 등의 근거를 든다. 이와 함께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보다는 복지적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한다¹³⁾.

3) 보호처분존치론

이 견해는 우범소년에 대해 소년법원이 관할하고 보호처분을 할 것을 주장한다. 이 견해는 우범소년도 반사회성있는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처분이 필요하고, 우범소년을 행정기관에 맡기기 보다는 소년법원에 맡기는 것이 소년의 인권보장에 더 충실할 수 있다고 한다¹⁴⁾.

4) 결어

우범소년을 소년법원관할로 하든 행정기관관할로 하든 운영만 잘 되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소년법원의 관할로 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관할로 할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법의 일반원칙에 따른다면, 우범소년이라는 개념은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범소년에 대해서는 복지적 행정처분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 경찰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13) 오영근·최병각,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5, 65면; 점승헌,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52면; 유진식, “스웨덴의 소년사법제도”,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법무자료, 제113집), 법무부, 1989, 189; 한상호, “현행소년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무자문위원논설집, 제5집, 1981, 266면. 촉범소년은 소년법원에서, 우범소년은 아동상담소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견해는 강봉수, “소년법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II - 소년사건 처리절차 -”,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53면.

14) 박형남,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법연구, 창간호, 2002, 61-62면; 소순무, “각국의 소년법제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제18집), 법원행정처, 1983, 743면.

경찰은 범죄소년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196조), 소년법 제4조 제2, 3항은 각각 “제1항 제2호(촉법소년) 및 제3호(우범소년)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이를 관할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상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하게 되면 선택의 여지없이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형법의 보충성원칙, 사법절차초기에서 소년을 해방한다고 하는 다이버전(diversion), 낙인효과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찰은 소년경찰직무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소년을 훈방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형식논리적으로만 보면 이러한 직무규칙은 상위법규에 위반되고, 경찰의 실무관행도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이 모든 대상소년들을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없고, 훈방 또는 즉결심판청구관행을 인정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나 소년법에 경찰이 훈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년법 제4조 제2항의 규정도 “관할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혹은 “송치하여야 한다. 단, 송치하는 것이 적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훈방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결심판의 경우도 형식논리적으로 보면 보호절차 보다 형사절차를 우선시하는 것으로서 소년보호이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벌금, 구류, 과료를 선고받는 것이 법원이나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소년법과 즉결심판절차법 중 소년법이 즉결심판절차법에 우선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여지가 있고, 이렇게 되면 경찰이 소년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즉결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3. 검찰조사단계에서의 문제점

검찰단계에서 어린이·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문제 즉, 검사선의주의와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가 특히 문제된다.

(1) 검사선의주의의 문제점

범죄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형사처분을 할 것인가를 최초로 결정하는 권한을 선의권(先議權)이라고 하는데, 법원과 검사 중 누가 이 권한을 갖는가에 따라 검사선의주의와 법원선의주의가 있다. 우리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벌금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검사선의주의를 따르고 있다.

검사선의주의에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된다. 첫째, 검사는 본질적으로 범죄소추기관이기 때문에 소년의 인격이나 환경보다는 범죄사실을 중시하게 되고, 선도가 아닌 처벌을 선호할 위험성이 있다. 검찰실무에서도 소년사건은 사안이 가벼운 것에서부터 무거운 순으로 기소유예, 구약식,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소년법원송치, 불구속구공판, 구속구공판의 순으로 처리되고 있다. 둘째, 검사가 보호처분을 청구하면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게 되므로 절차가 지연, 중복되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검찰단계에서 소년의 소질,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실제로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면 법원선의주의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년법원이 소년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법원선의주의를 택하고 있다¹⁵⁾.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형사처분절차와 보호처분절차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소년법원이 범죄소년에 대해 동일한 재판절차를 진행하여 교육처분(Erziehungsmaßregel), 훈육처분(Zuchtmittel), 소년형(Jugendstraf) 중 하나를 부과하므로¹⁶⁾, 절차선택권을 의미하는 선의권이란 개념이 별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범죄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보호처분을 할 것인가를 법원이 결정하므로 법원선의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법원선의주의를 택하고 있다. 즉, 경찰이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에게 송치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6조),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혐의가 인정되거나 촉범소년이나 우범소년에 해당하면

15) 캐나다 소년법 제16, 17조.

16) 원혜옥,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 독일 소년법원법상의 보호처분”, 형사정책, 제10호(1998) 233면 이하.

소년법원에 직접 송치해야 하고(소년법 제41조), 검사가 소년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거나 촉법소년이나 우범소년에 해당하면 소년법원에 송치해야 한다(소년법 제42조).

생각건대, 검사선의주의의 장점 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원선의주의로 전환하는 것이 절차의 중복이나 처벌위주의 사고로부터 소년들의 인권을 좀더 잘 보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입법적 개선이 요구된다.

(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문제점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란 검사가 선도위원(현재는 범죄예방자원봉사자) 또는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범죄소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는 범죄소년을 소년절차의 초기단계에서 이탈시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하는 제도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¹⁷⁾.

이와 같이 선도유예처분이 법원의 재판없이 검사가 자유제한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도유예제도는 법무부령(검찰사건사무규칙) 또는 법무부훈령(소년선도보호지침)에만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운영에 대하여 사법권의 독립 또는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대상소년에게 법률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벗어난 위헌적인 검찰권행사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유예의 경우 보호관찰법상의 근거규정을 가진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으로 충분한 법률상의 근거를 갖춘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이 있다.

물론 선도유예처분의 법적 성격을 검찰이 기소유예라는 형사처분을 하면서 대상소년의 동의를 바탕으로 교육적·복지적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고, 실제로 검찰의 선처로 대상소년이 은혜를 입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대상소년의 동의에 의하여 선도유예처분에 따른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한다.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나 소년부송치의 가능성이 있는 대상소년에게 선도유예처분은 실질적으로 유리한 처분일 수 있고, 또한 대상소년이 동의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의 선도유예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17) 김양균, “소년법의 선도유예제도 :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검찰, 제70호, 1978. 6., 69면 이하; 신동운, “다이버전운동과 선도조건부기소유예”, 형사정책, 제2호, 1987, 5면 이하; 오영근/최병각,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박재윤/김병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한독간의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9집, 1997, 37면 이하.

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기소나 소년부송치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소년으로서는 동의를 자발성은 사실상 제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대상소년이 자발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기본권제한이라는 측면은 여전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는 제거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선도유예처분에 대한 위헌여부문제에 선도유예제도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선도유예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에 합치하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¹⁸⁾.

4. 법원의 심판단계에서의 문제점

(1) 적법절차의 문제점

1) 문제의 제기

근대 소년법의 기본원칙이었던 국친주의에 의하게 되면 국가가 자녀를 사랑하는 어버이처럼 소년을 대하기 때문에, 즉, 국가와 비행소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였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써 자식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사람들이 부모의 교육에 간섭할 필요가 없고 부모에게 재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소년사법에서도 국가의 재량권을 넓게 인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권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소년사법에서는 성인사법에서와 달리 여러 가지 특칙이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특칙은 실체법상의 것과 절차법상의 것으로 나눌 수도 있고, 소년에게 유리한 것과 소년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눌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보호처분을 도입한 것(소년법 제32조), 온화하고 친절함 심리(제58조 제1항) 사형, 무기형의 완화(소년법 제59조), 소년감경(제60조 제2항), 가석방요건의 완화(제65조) 등은 소년에게 유리한 실체법적, 절차법적 규정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적 소송구조, 국선변호인의 불인정, 자백법칙이나 전문법칙의 배제, 형사보상의 불인정 등은 성인에 비해 소년에게 불리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소년법 제58조 제2항(제

18) 오영근,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1995. 12., 79면 이하.

1항의 심리에는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부정기형 등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년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2) 적법절차에 대한 강조

이러한 특칙들은 모두 국친주의와 소년의 개선, 교육을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대해서는 오늘날 두가지 방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소년의 개선, 교육이나 국친주의를 강조하면서도 소년이 성인에게 불리하게 처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년에 대한 개선, 교육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성인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규정들을 모두 없애자는 주장이다.

첫 번째 입장에서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In re Gault 판결¹⁹⁾이라고 할 수 있다. 동 판결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먼저 소년법원운동의 역사를 살펴본 후 성인사법과는 다른 소년사법을 만들어낸 동운동의 선한 동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소년에게 이익되게 한다는 동기로 인해 소년사법제도가 전통적 적법절차의 의미를 망각하였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소년사법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소년법원판사에게 재량권을 넓힘으로 인해 손실이 더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소년이 구금되어 있는 경우로 범위를 좁히면서 소위 캥가루법원(kangaroo court)²⁰⁾에서도 소년의 구금이 헌법적으로는 성인에 대한 구금과 다르지 않다고 하여 소

19) 387 U.S. 1 (1967).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964년 아리조나주의 길라카운티(Gila County, Arizona)에서 Francis Gerald Gault라는 15세의 소년이 이웃집에 수차례에 걸쳐 음란전화를 하였다는 혐의로 이웃집의 신고로 인해 구금되었다. Gault는 이전에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었다. 경찰은 Gault를 체포할 당시 일을 하고 있던 Gault의 부모에게 체포, 구금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다음날 Gault는 소년법원판사 앞으로 송치되었다. 비행사실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증인이 증언한 바도 없으며, 심리를 거쳤다는 기록도 없었다. 동일한 범죄를 성인이 범했을 경우에는 5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2개월 이하의 자유형에 처해졌을 것이지만, 소년법원판사는 Gault에게 21세될 때까지(즉 6년간의) 소년원(State Industrial School)에 수용될 것을 명하였다. 아리조나주법은 소년사건에서 항소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리조나주 대법원도 Gault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967년 미국연방대법원은 소년사건에 대한 아리조나주법이 적법절차(due process)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이 사건을 심판하게 되었다.

20) 캥거루법원이라는 말은 캥거루가 자기 새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법원이 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년법원의 절차도 수정헌법 제14조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Gault 사건에서의 재판절차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다. 수정헌법 제14조는 기소에 대한 적절한 통지, 부모 및 소년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할 것, 심리에서 반박(confrontation) 및 상호신문(cross-examination)의 인정, 자기 부죄거부를 위한 적절한 방어권인정(adequate safeguards against self-incrimination) 등을 요구하고 Gault 사건의 재판절차는 이러한 요구 중 어느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In re Winship 판결²¹⁾에서 연방대법원은 Gault 판결에서 선언된 적법절차의 요구 중에 소년사법절차에서도 비행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beyond reasonable doubt) 증명되어야 하는 것도 포함되느냐에 대해서 다루었다. 연방대법원은 처벌적 의미의 구금(punitive incarceration) 과 규제적 의미의 구금(은 사이에 Gault 판결에서 은 소년사법절차에서도 고도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형벌로서의 구금과 규제적 의미의 자유박탈(regulatory confinement)이 헌법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다고 하는 Gault 판결의 기준을 받아들였다. 연방대법원은 단순히 민사적 의미(civil labels)를 가졌거나 좋은 의도(good intentions)가 있다는 것이 소년법원에서 적법절차보장의 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소년사법에서 종전의 국친주의에 입각한 소년의 개선,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두 번째 입장은 소년사법에서도 성인사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벌 내지는 엄벌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 60년대말 이후 범죄인의 사회복귀 내지는 개선, 교육이라는 교정이념의 달성이 실패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불가능한 교정이념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차라리 범죄인의 처벌 내지 정의구현 등을 강조하는 입장이 강해졌다²²⁾. 이러한 입장에서는 소년법에 대해서도 사회복귀, 개선,

21) 397 U.S. 358 (1970). 12세의 소년인 Samuel Winship은 한 여성의 지갑에서 112달러를 훔쳤다. 주(州)는 가정법원에 Samuel을 비행소년으로 선언하고 소년원으로 보낼 것을 청원하였다. 가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다. New York 항소법원(Appellate Court)은 동결정이 Gault 판결에서 요구를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였다. 동법원은 소년사법절차에서 일반형사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절차적 보장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소년에게도 적법절차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할 권리의 본질적 내용은 보장해야 한다고 하였다.

22) 범죄인의 개선, 교육을 통한 사회복귀를 강조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은 다음 세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이론적인 것으로서 사회복귀이론의 인간관·범죄관이 올바르지 않고,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전체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둘째는 실제적 측면에서의 비판으로 교정전문가의 편견이나 무능, 형사시설의 문제점, 사회복귀에 필요한 범죄인의 자발성과 교정기관이 사용하는 수단의 강제성 사이의 모순 등으로 인해

교육 보다는 처벌을 강조하게 되고, 이러한 입장은 특히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소년폭력범의 증가로 인해 더 힘을 얻게 되었다²³⁾.

3) 평가

소년법을 성인법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비판을 가할 수 있다. 소년은 성인과는 다르고 인격의 변화가능성이 많다는 근대 이후의 전통적인 사고가 근거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소년법을 성인법과 같이 처우하자는 주장은 근대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타당한 입장은 국친주의에 근거하여 소년의 개선, 교육과 사회복귀를 목표로 소년사법을 운영하되, 이로 인해 소년이 성인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것이 있다면 이를 지양, 개선하는 방향으로 소년사법을 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법절차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들에 대한 개선, 보완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 적법절차실현의 구체적 구현방안²⁴⁾

1) 진술거부권과 그 고지

사회복귀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한다. 셋째는 실증적 측면에서의 비판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사회복귀효과가 거의 없다고 한다. 사회복귀이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오영근,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24면 이하; Greham M. Sykes & Robert K. Merton, *Crimin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1978, 51-57면; Burton M. Leisure, *Liberty, Justice and Morals: Comtemporary Value Conflicts*, New York: Macmillian, 1970, 156-190면; Edgar H. Schein, “Man Against Man: Brainwashing”, *Correctional Psychiatry and Journal of Social Therapy*, Vol. 8(1962), 91-120면; John Rosecrance, “Probation Supervision: Mission Impossible”, *Federal Probation*, Vol. 50 No.1(1986), 28-29면;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Struggle for Justice*, New York: Hill and Wang, 1971, 97면 이하; Robert Martinson, “What Works?- The Martinson Report”, in Norman Johnston, Leonard Savitz & Marvin Wolfgang, eds., *The Sociology of Punishment and Corre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0, 789면 이하 등 참조.

23) 이러한 엄벌경향에 대해서는, Dean J. Champion, “Juviniiles Treated as Adults for Criminal Prosecution”, 최인섭 역, “형사처벌을 위해 성인법으로 취급되는 소년범들”, 형사정책연구, 2001년 겨울호(통권 제48호)를 참조. 독일의 경우 소년법에 대한 엄벌로의 전환경향에 대해서는 이진식, 앞의 논문(각주 4의 논문) 참조. 일본의 최근 소년법에 대한 엄벌화경향에 대해서는, 横山 實, “日本における少年非行の動向と嚴罰化”, 소년법연구, 창간호, 69면-99면; 酒井安行, “日本における少年法改革をめぐる最近の論議”, 소년법연구, 창간호, 225면 이하 등 참조.

24) 소년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문제를 광범위하게 다룬 논문으로, 강영호, “소년심판절차상의 적법절차보장”, 청소년범죄연구, 제5집, 1987, 109면 이하.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289조는 “피고인은 각개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하여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다. 소년법 제48조는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형사사건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년형사사건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됨은 물론이다. 그런데 소년보호사건에서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진술거부권이 인정되고 그 고지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형사소추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있고 법원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²⁵⁾. 이는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이냐 그 고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호처분의 표방하는 소년보호의 이념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의 일종이 분명하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는 개념은 보호처분에도 적용되어야 하므로 진술거부권을 인정해야 하고 따라서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에게도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할 것이다.

2) 증거법칙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하여 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임의성있는 자백의 경우에도 증명력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자백법칙이라고 한다. 또한 제310조의2는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자백법칙이나 전문법칙이 소년형사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

25) 점승헌,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12면; 유원석, “소년보호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의 준용”,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제62집), 법원행정처, 1993, 875-876면.

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에도 자백법칙이나 전문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도 임의성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문제는 자백이나 전문증거만으로도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가이다. 국친주의에 의할 경우 이를 긍정해야 할 것이고, 보호처분도 형사제재의 일종이므로 적법절차를 존중해야 한다고 할 경우에는 자백이나 전문증거만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소년사건에서도 반대신문과 상호신문이 필요하다고 한 미국의 Gault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자백이나 전문증거만을 근거로 보호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에서 직권주의적 소송구조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해석론상으로는, 임의성과 신빙성있는 자백이나 전문증거만을 근거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²⁶⁾. 왜냐하면 소년형사사건에서와 달리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소년법 제48조와 같은 규정이 없고, 보호처분과 형벌은 형사제재이기는 하지만 그 취지나 효과가 완전히 같다고 할 수 없고, 일반 형사소송에서도 전문법칙은 반대신문을 통해 증거의 신빙성을 음미하기 위한 것이고 신빙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소년이 비행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전문증거의 신빙성을 음미하기 위해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하여 소년에게 반대신문권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는 견해²⁷⁾가 있다. 그러나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전문증거만으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는가가 그리 문제되지 않고, 주로 이 문제는 원진술자의 소재과악이 불가능하거나²⁸⁾ 기타 사정으로 인해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할 수 없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3) 증거조사, 강제처분신청

일반형사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증거조사나 강제처분신청권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294조). 그러나 소년법 제26조, 제27조 등은 법원의 증거조사나 강제처분만을 인정하고 있고 소년의 증거조사 또는 강제처분신청권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에서는

26) 같은 취지, 오영근/최병각, 앞의 책, 106-108면; 유원석, 앞의 논문, 878-879면; 백춘기,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의 비행사실”,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제62집), 법원행정처, 1993, 860면.

27) 백춘기, 앞의 논문, 860면.

28) 민학기,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사건의 개선을 위한 회의결과 보고서, 법원행정처, 1997, 73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만이 인정되고, 소년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²⁹⁾. 그러나 일반형사소송에서도 증거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5조) 피고인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더라도 반드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형사소송에서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은 증거조사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소년보호사건에서 피고소년이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필요까지는 없다.

4) 국선보조인제도

일반형사사건이나 소년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정되거나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0조, 제33조).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법 제17조 제1, 2항은 각각 “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인정되는 변호인제도를 부인하고 보조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즉, 당사자주의적 성격도 지니고 있어서 검사의 공격과 피고인의 방어에 의해 진행되고 법원은 공평한 제3자의 입장에서 심판을 하는 형사재판에서의 변호인은 공격당사자인 검사의 공격으로부터 수비당사자인 피고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소년법관은 공평한 심판자의 역할이 아니라 소년을 보호하는 후견자로서 비행의 실체와 소년의 요보호성을 파악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보호사건에서는 소년의 보호자로서의 변호인은 필요없고, 소년의 보호자 내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 법관의 업무를 보조할 보조인이 필요하게 된다. 소년법은 법관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선보조인은 인정하고 있지만 국선보조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년법관이 소년조사관들의 보조를 받아 재판을 진행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선보조인을 인정하는 한 국선보조인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법관 또는 소년조사관이 소년의 무죄 혹은 유리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으로도 법관이나 조사관들이 소년들에게 유리한 활동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년의 권익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적법절차의 준수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년법에 국선보조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³⁰⁾.

29) 백춘기, 앞의 논문, 861면; 유원석, 앞의 논문, 881-882면.

(3) 조사제도의 문제점³¹⁾

소년법 제9조는 “조사는 의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등을 구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는 “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제2항은 “소년부판사는 조사관에 대하여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동 제2항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는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은 “법원은 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동 제2항은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당해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기타 관계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소속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비행소년의 재범 또는 재비행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소년의 비행 내지 범죄의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에 상응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의 비행 내지 범죄의 원인이 된 소질과 환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소년조사제도라고 한다. 소년조사제도는 의료모델(medical model)에 의한 것으로서 마치 병원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의 증상을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상의 원인을 파악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소년조사제도는 병원에서 진단과 처방을 위해 행하

30) 같은 취지, 정진연, “소년법의 이념과 보조인의 역할”, 소년보호연구, 제4호, 2002, 190 - 191면; 박형남, 앞의 논문, 65-66면.

31) 소년조사제도는 재판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 검찰의 수사단계, 형이나 보호처분의 집행단계에서도 필요한 제도이지만, 이 글에서는 재판단계에서의 조사제도에 대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적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수사단계나 형 및 보호처분의 집행단계의 조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

는 각종검사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조사제도는 소년의 개선, 교육을 위한 처우의 개별화, 과학화를 위한 것이므로 과학적, 전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성인절차에 비해 소년사법절차에서는 광범위한 전문가로서의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조사제도가 부실하게 행해진다면, 비전문적 판단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현재 소년조사제도의 실태를 보면 처우의 개별화를 위해 필요한 정도의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확보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도 아직도 충분한 수의 전문조사관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고, 전문조사관이 아닌 일반공무원이 순환보직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³²⁾. 또한 과학적 조사기법도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관의 확충, 조사관의 사기진작, 조사기법의 과학화 및 전문화 등을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³³⁾.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문제점

소년법 제32조 제3항은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으로서 단기보호관찰처분 또는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4항은 단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50시간을, 장기보호관찰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각각 초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은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인 보호관찰처분에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32) 10여년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유진식, “소년조사관제도의 분석과 그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9집, 177 - 202면.

33) 소년사법의 각 단계에서의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이춘화,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2., 제5장; 유진식, “소년조사관제도의 분석과 그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9집, 1991, 177면 이하; 이상철,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등 참조.

때 봉사 또는 수강시간의 최대한은 200시간이고,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인 집행유예를 하면서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때에는 봉사시간의 최대한은 500시간, 수강의 최대시간은 200시간이 된다.

이러한 봉사 또는 수강시간은 지나치게 길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대적 의미의 사회봉사명령을 최초로 시행하였다고 평가되는 영국의 경우 사회봉사는 부가처분이 아니라 독립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이 16세인 경우에는 40시간 - 120시간, 17세 이상인 경우에는 40시간 - 240시간인 것³⁴⁾과 비교하여 보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리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할 뿐더러,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³⁵⁾고 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상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에 대해 그 시행초기부터 법원이 무심코 해오던 관행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법 제32조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의 문리에 따른다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선택적인 것이고 사회봉사와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판례를 따른다면 보호처분에 병과되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최대시간은 400시간이고, 집행유예에 병과되는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의 최대시간은 700시간이 되기 때문이다. 법률상의 200시간, 500시간도 너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해석상으로 400시간 또는 700시간까지 늘려야 할 이론적, 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34) 오영근,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그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3호(1991년 겨울호), 255-287면.

35)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따라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동시에 명할 수 없고 하나만 명할 수 있고, 각 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수강이나 사회봉사 시간을 운용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은 소년에 대해 20시간 정도를 사회봉사에 필요한 자세, 기술 등을 가르치는데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수강을 별도로 명하는 것은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하고, 판례가 변경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입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³⁶⁾.

(5) 부정기형의 문제점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정기형이란 상대적 부정기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관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부정기형은 소년에 대해 단기까지는 형을 집행하되 단기를 지난 후에 소년이 개선, 교육되어 재범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장기 이전에 석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까지 구금하도록 하되 설사 소년에게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장기 이상으로 구금할 수는 없도록 하는 형태의 자유형을 말한다. 부정기형은 소년은 성인에 비해 인격의 변화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소년에 대해서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도 응보 보다는 개선, 교육을 강조하는 형태의 형벌이다³⁷⁾.

그러나 부정기형이 과연 그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부정기형으로 인해 소년이 성인에 비해 더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부정기형을 통해 소년의 개선, 교육이라는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 보다는 소년의 개선, 교육이라는 부정기형의 목표는

36) 소년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정동기,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유숙영,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오선주,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문제점 :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청주대 법학논집, 제12집, 1997, 159면 이하;

37) 부정기형에 대해서는, 오영근/최병각,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장중식, “부정기형에 관한 고찰”, 현대형사법론(익현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1104-1133; 이진우, “미국에 있어서의 부정기형”, 서울대학교 법학, 제3권(특별호), 1972, 184면 이하 등 참조.

그 자체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부정기형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부정기형을 없애거나 축소해야 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역으로 부정기형을 강화, 확대하고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기형을 통해 소년이 성인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부정기형의 존립 자체에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부정기형의 문제점 중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부정기형이 단기가 아닌 장기를 중심으로 집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가석방의 문제로서 후술한다.

(6) 미결구금 및 형사보상의 문제점

1) 미결구금의 문제

소년사건에서는 성인사건에서와 달리 구금에 관한 특칙이 있다. 소년법 제 55조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구속 이외에 ‘부득이한 경우’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구속의 요건을 좀더 엄격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보호사건에 대해서 소년법 제18조는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시설위탁, 병원·요양소위탁, 소년분류심사원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호사건에서의 임시조치는 형사사건에서의 구속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속 특히 보호사건에서 사실상 구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임시조치들이 남용되지 않도록 좀더 상세한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결정의 요건으로서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요양소위탁결정의 요건으로서 ‘소년의 건강과 복지를 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등 좀더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구금되는 경우 소년들이 다른 소년들로부터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도 소년에 대해서는 특히 미결구금의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

소년법 제55조 제2항은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을 성인과 분리수용하여 악풍감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지닌 것일 뿐만 아니라 소년들끼리도 분리수용함으로써 서로간의 악풍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다른 소년범은 물론

이고 성인범들과도 함께 수용되어 있다. 이러한 실무관행은 소년법의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속된 소년들을 일반구치소나 교도소에 수용할 것이 아니라 분류심사원 등에 수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³⁸⁾.

2) 형사보상의 문제

헌법 제28조는 “형사피고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사보상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고 보호사건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보호사건에서는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불처분결정을 한다(소년법 제29조). 따라서 예를 들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었다가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처분결정을 받은 소년이 형사보상을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석된다.

소년법 제18조의 소년보호시설위탁, 병원·요양소위탁, 소년분류심사원위탁 등을 소년의 이익을 위한 조치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소년의 자유를 박탈하는 미결구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소년들에 대해서는 보상의 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헌법이나 형사보상법의 해석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무리가 있으므로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보호사건에서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처분결정을 받은 소년에 대해 형사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형사보상법에 두거나, 소년법에 동소년에 대해 형사법원에 이송하여 무죄판결을 하게 하거나 소년법원이 무죄판결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인데³⁹⁾, 형사보상법에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간명한 입법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38) 소년범인신구속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김보환, “소년법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85 - 103면; 김일수, “소년법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119 - 140면; 최인섭, “소년구금제도의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9집, 1991, 55 - 76면.

39) 오영근/최병각, 앞의 책, 108-109면.

40) 일본의 소년보상법의 내용과 우리나라에서도 소년보상의 필요성을 지적한 논문으로서,

5. 보호처분이나 형집행단계에서의 문제점

(1) 민간시설위탁처분의 문제점

소년법 제32조 제4, 5호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처분, 병원, 요양소에 위탁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민간시설로서 소년원등과 같은 국가시설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소년의 개선,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기관 보다는 이러한 민간시설위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간시설들에서도 소년의 처우를 개별화, 과학화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시설들의 경우 수용인원이 지나치게 많은데 이는 그 자체가 수용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¹⁾. 또한 수용시설이 특성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즉, 대부분의 위탁시설이 시설내에서의 외부강사의 강연이나 훈시 등 주입식 교육에 치중하고 있고, 사회와 연계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사회내처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평가되고 있다. 대부분의 위탁시설의 운영주체가 종교단체인데 이 경우 수용소년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도 문제될 수 있다고 한다⁴²⁾.

따라서 민간위탁시설에서 소년의 처우를 과학화, 개별화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감독이 필요하다⁴³⁾.

(2) 소년원수용처분의 문제점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 7호는 각각 단기소년원송치처분, 소년원송치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제5항은 “단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수용

최종식, “소년보호사건과 형사보상문제”, 소년보호연구, 제4호, 2002, 295-322면.

41) 김준호/이순래,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92면에 의하면 위탁시설에서의 적절한 수용인원은 20명 이하인데, 우리나라의 위탁시설 중 이러한 기준에 맞는 시설은 거의 없을 정도로 과밀화현상이 심각하다고 한다. 기타, 박형남, 앞의 논문, 59-60면.

42) 점승현, 앞의 논문, 196-197면.

43) 이와 관련하여, 차용석, “비행청소년선도를 위한 유관기관의 개요 및 상호협력에 관한 문제”, 청소년범죄연구, 제2집, 1984, 9-34면; 안재영, “법원과 비행청소년의 사회복귀기관 상호간의 협력”, 청소년범죄연구, 제2집, 1984, 35면 - 56면; 홍경호, “법원과 소년보호단체와의 협력”, 청소년범죄연구, 제2집, 1984, 71면 - 92면; 안재정, “법원과 보호소년위탁기관과의 협력”, 청소년범죄연구, 제2집, 1984, 93면 - 100면; 심영희, “소년보호위탁을 위한 위탁단체 육성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1986, 91면 이하.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장기소년원송치처분의 경우 수용기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소년원법 제43조는 제1항은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3세에 달한 때에는 이를 퇴원시켜야 한다”, 동 제2항은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에 대하여 교정의 목적을 달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이를 퇴원시킨다.”고 하여 법률의 수준에서 장기소년원송치처분은 절대적 부정기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소년원송치처분을 하는 경우 소년원장은 그의 자문기관은 소년원내 처우심사위원회로 하여금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는데(소년원법시행령 제15조-제16조), 이 때에 소년원의 수용기간이 정해지게 된다. 즉, 이 때에 7개월-12개월의 중기수용, 13개월 이상 18개월의 일반장기수용, 19개월 이상 25개월 미만의 특별장기수용 중의 하나가 결정된다. 그리고 소년원장은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동시행령 제17조).

소년원수용이 교도소수용과는 달리 복지적 처분이라거나 소년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년원수용처분 역시 형사제재의 일종임이 명백한 것으로서 그 기간의 결정은 소년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원장의 자문기관인 처우심사위원회에 7개월 - 25개월 사이에서 수용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소년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용의 종류결정이나 변경에 대한 법관의 개입⁴⁴⁾, 이의제기의 허용 또는 사후심사 등과 같은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규정들을 지침이나 시행령에 둘 것이 아니라 소년법이나 소년원법과 같이 법률에 두어야 한다.

(3) 가석방, 가퇴원의 문제점

1) 부정기형에서 가석방요건의 문제

소년법 제65조 제3호는 부정기의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단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정기형에서의 가석방은 단기 이전의 가석방이라야 가석방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단기 이후의 석방은 가석방이 아닌 석방이라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단기가 경과한 이후 재범위험성이 없어서 석방되었다면 출소한 후 재범을 하였을 경우에도 가석방의 취소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장기까지의 나머지 기간에 대해 형집행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4) 민학기, “소년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소년법연구, 창간호, 2002, 168면.

그러나 실무에서는 가석방이 장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즉 실무에서는 단기 이후의 석방도 가석방이라고 하고, 가석방심사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장기를 기준으로 수용율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2년 11월에서 2003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서울보호관찰심사회에 가석방심사결정이 신청된 사건 중 부정기형이 선고된 사건은 모두 12건인데 이 중에서 단기를 경과하지 않고 가석방신청이 된 사건은 6건, 단기와 장기 사이에 가석방이 신청된 사건은 6건이었다. 그러나 수용율은 장기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가장 높은 것은 93.4%, 가장 낮은 것이 75%였다. 따라서 단기에 못미쳐 가석방이 신청된 사건의 경우에도 단기를 기준으로 하면 대부분 그 수용율이 90%에 가깝다.

이는 단기의 3분의 1이면 가석방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석방 신청을 위한 수용율을 내부지침에 의해 법률에서 정하는 것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상위법규에 위반되는 하위법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의 하위법규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2) 가석방심사표, 가퇴원심사의 문제

가석방과 가퇴원은 과거의 비행사실 보다는 장래의 재범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가석방·가퇴원심사표는 1. 인적사항, 2. 수형사항, 3. 범죄관련사항, 4. 교정·교화사항, 5. 향후생활계획 등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가석방·가퇴원심사에서는 교정·교화사상이나 향후생활계획 등 보다는 범죄사실 등을 먼저 심사하게 되고 이것이 가석방·가퇴원 허용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교정·교화사상이나 향후생활계획 등의 경우 ‘수용태도가 양호하다’,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 ‘타재소자의 모범이 된다’는 것과 같이 추상적인 근거가 기재되어 있다. 교도소나 소년원 담당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가석방·가퇴원의 신청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겠지만, 특히 범죄사실이 무거운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3) 가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문제

소년원가퇴원자들의 경우 만기퇴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가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6개월에서 1년

6개월 사이의 보호관찰을 붙일 수 있다. 보호관찰기간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소년의 죄질, 범죄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대체로 범죄경력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런데 가퇴원신청사건의 경우 잔여수용기간이 1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가퇴원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 가퇴원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소년원 만기퇴원자 혹은 가퇴원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상당기간 동안 소년원에서 생활한 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원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만기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기퇴원해야 할 정도로 개선, 교육이 되지 않은 소년을 가퇴원시키고 대신 1년 6개월 동안 보호관찰에 붙임으로써 법률의 공백을 메꾸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편법이라고 할 수 있고, 나아가 탈법행위라는 비난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퇴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만기퇴원 보다는 좀더 시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 가퇴원자가 만기퇴원자에 비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기퇴원자에 대한 보호관찰을 법률에 규정하든지 아니면 가퇴원자에게 잔여수용기간 보다 실질적으로 부담스러운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4) 보호처분과 상습성인정자료의 문제

소년법 제32조 제5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례는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과거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고 한다⁴⁵⁾. 소년법 제52조와 판례의 입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보호처분을 받았던 소년이 이후 일정한 범행을 한 경우 상습성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형벌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형벌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판례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지만,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습성 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를 제32조 제5항에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45) 대법원 1973.7.24. 선고 73도1255 전원합의체 판결; 1987.2.24. 선고 86도2725 판결;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963 판결;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887 판결

IV. 소년원생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인권침해사례

1. 설문조사 및 분석의 내용과 방식

소년사법절차에서 청소년·어린이 인권침해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유형의 인권침해사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년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는 청소년이 인권침해라고 의식하는 경우가 있고,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는 소년들이 인권침해라고 의식하는 행위유형들을 파악하였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대부분은 소년들이 의식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들 이외에 소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형태의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단체의 실무가들에 대한 심층면접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의 상당부분은 청소년단체실무가들의 의견이나 자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별도의 심층면접은 실시하지 않았다.

설문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첫째, 인권침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범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설사 그 범위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소년원생들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불만스러운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없는가 하는 식으로 설문을 작성하였다. 억울한 일들 중에는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 유형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이는 설문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둘째, 소년원생들의 대답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권침해유형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므로 대답을 선택하는 형태의 질문과 서술하는 형태의 질문을 하여 인권침해행위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행위들을 언급하도록 하였다.

셋째, 법률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법률용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응답자들이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함으로써 잘못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는 서울소년원 수용학생 307명과 춘천소년원 수용학생 98명 등 총 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실시기간은 2002년 12월 23일부터 24일까

지 이틀간이었다.

설문조사의 목적이 인권침해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응답자의 일정한 특징과 응답간의 상관관계 또는 응답간의 상관관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분석을 위한 대한 특별한 통계적 분석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일정한 인권침해 유형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행해지고 있는가는 이 글의 관심사가 아니다. 이 글은 법적 접근방법을 사용하고 법적인 관점에서는 인권침해사례가 단 한 건만 있어도 중대한 문제가 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1. 설문조사 및 분석의 내용과 방식

제일 먼저 수용학생의 연령과 가족생활 및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하였다.

(1) 응답자의 연령

응답자 405명 중 연령별 인원과 비율은 < 표 1 >과 같다. 즉 12세 1명, 13세 6명, 14세 14명, 15세 20명, 16세 56명, 17세 85명, 18세 100명, 19세 87명이었다. 12, 13세의 촉법소년혹은 우범소년은 7명(1.73%)였다.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매우 적으므로 촉법소년을 보호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복지적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 표 1 > 응답자의 연령

인원 \ 연령	12세	13세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19세	무응답
N (405)	1	6	14	20	56	85	100	87	36
% (100)	0.25	1.48	3.46	4.94	13.83	20.99	24.69	21.48	8.89

(2) 응답자의 부모에 대한 태도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게되는 인권침해사례는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분석하는 데에 참고가 될 수 있으므로 수용학생들의 가족생활과 학교생활에 대해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 중 소년원에 들어오기 전의 부모관계는 < 표 2 >와 같다. 양친과 함께 생활한 소년은 176명(44.6%)이고, 부친

과 생활한 소년은 86명(21.23%), 모친과 생활한 소년은 52명(12.84%), 부모가 없는 소년은 26명(6.42%), 기타 58(11.36%)였다. 기타 소년들은 친척들과 생활하거나(4.44%), 친구들과 생활하거나(2.96%), 혼자서 생활한(2.22%) 소년들이었다.

< 표 2 > 응답자의 입원전 부모와의 생활관계

인원 \ 형태	부모님 모두와	아버님 과만	어머님과만	모두 안 계심	기타	무응답
N (405)	176	86	52	26	58	7
% (100)	44.46	21.23	12.84	6.42	11.36	1.73

소년원수용 전의 부모와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 표 3 >과 같다. 부모와의 생활에 만족한 소년은 287명(70.86%)인데 비해 불만인 소년은 19명(4.69%), 보통이라고 응답한 소년은 69명(17.04%), 모르겠다 22명(5.43%), 무응답 8명(1.98%)였다. 부모와의 생활에 만족한 소년의 비율이 불만인 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눈에 띈다.

< 표 3 > 부모와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287	19	69	22	8
% (100)	70.86	4.69	17.04	5.43	1.98

소년들의 부모님에 대한 불만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 표 4 >와 같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는 것(71명, 17.53%), 부모로서 제대로 돌봐주지 않는 것(46명, 11.36%), 본인의 생각을 항상 무시하는 것(39명, 9.63%), 용돈을 주지 않는 것(32명, 7.90%), 공부만을 강요하는 것(29명, 7.16%)의 순으로 불만이 있었다. 기타 사항 중에는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3.73%), 부모님의 이혼 (6.17%), 심한 욕설(7.41%), 구타(7.16%), 의심(1.48%) 등이 있었다.

< 표 4 > 부모님에 대한 불만

인원 \ 이유	용돈을 주지 않음	공부만을 강요	부모로서 제대로 보아주지 않음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거의 없다	본인의 생각을 무시	기타	무응답	기타(25.16%) :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3.73%), 부모님의 이혼 (6.17%), 심한 욕설(7.41%), 구타(7.16%), 의심(1.48%)
N (405)	32	29	46	71	39	102	148	
% (100)	7.90	7.16	11.36	17.53	9.63	25.16	36.54	

부모님으로부터의 인권침해 여부를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 표 5 >와 같다. 부모로부터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은 폭언(109명, 26.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무관심·대화단절(65명, 16.05%), 이해부족(15.31%)의 순이었다. 이러한 행위들이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습적인 구타라고 응답한 학생이 46%(11.36%)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소년들 10명 중 한명은 부모로부터 상습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표 5 > 부모로부터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인원 \ 내용	상습적인 구타	폭언	무관심·대화단절	이해부족	기타	무응답	기타(9.14%) :부모님의 의심(2.22%), 형제간의 차별대우(1.23%), 부모님의 이혼(0.99%).
N (405)	46	109	65	62	37	86	
% (100)	11.36	26.91	16.05	15.31	9.14	21.48	

(3) 응답자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응답자들이 소년원에 수용되기 이전에 학교에서 당한 인권침해유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을 하였다.

학교선생님에 대해 만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 표 6 >과 같다. 학교선생님에 대해 만족했다는 응답이 133명(32.84%)이 불만이었다는 응답 66명(16.30%) 보다 많았으나, 부모에 대한 만족도와 비교할 때 만족도는 현저히 낮고 불만도는 훨씬 높았다.

< 표 6 >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133	66	145	53	8
% (100)	72.84	16.30	35.80	13.09	1.98

응답자들이 느끼는 학교선생님에 대한 불만의 내용은 < 표 7 >과 같다.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91명, 22.47%), 다른 학생과 부당한 차별대우(81명, 20%),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함(43명, 10.62%), 공부만 강요(38명, 9.38%), 자주 때림(26명, 6.42%)의 순이었다. 기타 중에는 고민을 들어주지 않음(3.70%), 선입견이 심함(2.96%), 관심을 주지 않음(1.23%) 등이 있다. 이중 친구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 자주 때리는 것은 각각 모욕과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소년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표 7 > 선생님들에 대한 불만

인원 \ 내용	다른 학생과 부당한 차별대우	공부만을 강요	자주 때렸다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자주함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음	기타	무응답	기타(14.57%) : 고민을 들어주지 않음(3.70%), 선입견이 심함(2.96%), 관심을 주지 않음(1.23%).
N (405)	81	38	26	43	91	59	145	
% (100)	20.00	9.38	6.42	10.62	22.47	14.57	35.80	

학교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일반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는

데, 그 응답의 내용은 < 표 8 > 및 < 표 9 >와 같다.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년은 73명(18.02%)이고 없다고 응답한 소년이 258(63.70%)이다. 없다고 응답한 소년이 있다고 응답한 소년 보다 훨씬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20%에 가까운 소년들이 학교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한 것은 학교에서 소년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구체적 예로는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49명, 12.10%), 항상 무시함(47명, 11.60%), 심한 체벌(11.11%), 폭언(29명, 7.16%), 폭행이나 협박(18명, 4.4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차별대우나 무시하는 것 그 자체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지만, 심한 체벌, 폭언, 폭행이나 협박 등과 같이 명백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비율이 응답자의 20%를 넘어서는 것은 학교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흔히 ‘사랑의 매’라고 미화되는 체벌이 사실은 체벌을 당하는 청소년들에게 반성이나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은 그들이 학교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다. < 표 10 >에서 보는 것과 같이 104명의 응답자(25.68%)는 선생님들에게 폭언과 구타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표 8 > 학교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 유무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73	258	61	13
% (100)	18.02	63.70	15.06	3.21

< 표 9 > 학교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

인원	내용	폭언	폭행 이나 협박	심한 체벌	비인 간적 인 대우	항상 무시 함	다른 학생 과 차별	기타	무 응 답	기타(21.73%) :나를 항상 의심한 다(7.90%), 선입견 이 심하다(2.96%)
N (405)		29	18	45	40	47	49	88	154	
% (100)		7.16	4.44	11.11	9.88	11.60	12.10	21.73	38.02	

< 표 10 > 학교선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인원	내용	선입견을 갖고 다른 학생과 차 별 대우를 하지 말아 주세요	폭언과 구 타를 하지 말아 주세 요	관심을 갖 아 주세요	공부 만 으 로 사람을 평 가 하지 말 아 주 세 요	기타	무응답	기타(8.89%) :선생님과 자신의 문 제나 고민을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 습니다(3.46%), 자신 을 의심하지 말고 믿 어주세요(1.23%), 학 생입장에서 생각해 주세요(2.96%).
N (405)		94	104	64	42	36	65	
% (100)		23.21	25.68	15.80	10.37	8.89	16.05	

2. 경찰조사단계에서의 인권침해사례

(1) 일반적 사항

응답소년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계기는 < 표 11 >에서와 같이 현장에서 체포됨(122명, 30.12%), 공범친구의 자백(98명, 24.20%), 피해자의 고소(19.75%), 다른 사람의 신고(69명, 17.04%)의 순이었다. 이것 이외에 부모님의 신고(1.73%), 친구의 신고(0.99%)도 있었다.

< 표 11 >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계기

인원 \ 조사계기	현장체포	피해자의 고소	다른 사람의 신고	함께 범행한 친구의 자백	기타	무응답	기타(6.91%) : 부모님의 신고(1.73%), 친구의 신고(0.99%)
N (405)	122	80	69	98	28	8	
% (100)	30.12	19.75	17.04	24.20	6.91	1.98	

경찰조사에 대해 만족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 표 1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족한다가 41명(10.12%)였음에 비해 불만이다가 263명(64.94%)로서 불만족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경찰조사단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 표 12 > 경찰조사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41	263	61	29	11
% (100)	10.12	64.94	15.06	7.16	2.72

(2) 인권침해의 유형

< 표 13 >은 경찰의 조사에서 불만족한 점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이다. 응답자들 중 149명(36.79%)가 자백을 강요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 중에는 구타와 협박(3.95%), 둔기로 폭행(1.23%)이라고 응답한 소년들도 있었다. 100명(24.69%)의 소년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고 응답하였고, 86명(21.23%)의 소년은 경찰이 너무 무섭게 대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자백강요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찰단계에서 대부분의 소년들에 대한 자백강요 등의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을 못 만나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소년이 있었는데 이 역시 인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13 > 경찰조사에 대한 불만이유

인원 \ 이유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자백을 강요당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가족을 못 만나게 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학생들 과의 차별대우 때문	너무 무섭게 대했기 때문에	기타	무응답	기타(13.83%) : 자신의 의사를 무시(1.48%), 구타와 협박(3.95%), 둔기로 폭행(1.23%), 폭행과 협박으로 자백강요(4.94%).
N (405)	143	149	100	41	58	21	86	56	59	
% (100)	35.31	36.79	24.69	10.12	14.32	5.19	21.23	13.83	14.57	

경찰조사에서 소년들이 당하는 인권침해 유형을 좀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없는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 표 14 >와 같다.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가 268명(61.23%)으로서 당한 적이 없다고 한 응답자 109명(26.91%)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 표 14 >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의 여부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248	109	37	11
% (100)	61.23	26.91	9.14	2.72

경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예는 < 표 15 >와 같다. 불공정한 사건처리나 비인간적인 대우와 같이 추상적인 인권침해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소년들도 상당수 있지만, 많은 소년들이 구체적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구체적 인권침해의 예로서, 폭언이라고 응답한 소년이 176명(43.46%), 구타라고 응답한 소년이 164명(40.49%), 협박이라고 응답한 소년 108명(26.67%) 등으로서 적어도 절반 가까운 소년들이 경찰의 조사단계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 표 16 >은 < 표 15 >에서 예시된 인권침해에 대해 응답자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15 > 경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

인원 \ 내용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불공평한 사건 처리	비인간적 대우	기타	무응답	기타(7.90%) : 고문(0.74%), 폭력으로 자백 강요(1.98%), 조서의 내용을 안 적음(0.74%), 죄명이 바뀌었다(0.99%)
N (405)	108	164	176	102	77	32	69	
% (100)	26.67	40.49	43.46	25.19	19.01	7.90	17.04	

< 표 16 > 경찰관에게 하고 싶은 말

인원 \ 내용	협박하지 말아주세요	구타와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차별대우 없이 공정한 수사를 주세요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세요	무응답
N (405)	86	128	56	45	53	37
% (100)	21.23	31.60	13.83	11.11	13.09	9.14

3. 검찰조사 단계에서 인권침해 사례

(1) 일반사항

검찰청의 조사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가 78명(9.26%), 불만이다가 132명(32.59%)로서 불만인 비율이 만족인 비율 보다 높았다. 이는 경찰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가 41명(10.12%)였음에 비해 불만이다가 263명(64.94%)인 것에 비해서는 만족도는 높고, 불만족도 낮은 것이지만, 검찰조사에서도 여전히 불만족인 비율이 높은 것은 검찰조사에서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17 > 검찰청조사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78	132	125	59	11
% (100)	19.26	32.59	30.86	14.57	2.72

(2) 인권침해의 유형

검찰청 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의 내용은 < 표 18 >과 같다. 이 문항에서 2개 이상의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60명의 학생(14.81%)가 자백을 강요당했고, 53명의 학생(6.42%) 가족을 못만나게 하는 등의 명백한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이 역시 경찰에서 보다는 적은 비율이지만 검찰조사단계에서도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짓말을 해서 자백을 하도록했다(0.74%), 심한 욕설을 한다(3.70%), 불펜이나 자 등으로 가혹행위를 했다(1.73%), 조서내용을 불리하게만 작성하였다(0.99%)는 응답 등도 있었는데, 이를 통해 소년들이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를 호소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 표 18 > 검찰조사에 대한 불만의 이유

인원	이유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자백을 강요당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가족을 못만나게 했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너무 무섭게 대했기 때문에	기타	무응답	기타(10.62%) : 거짓말을 해서 자백을 하도록 했다(0.74%), 심한 욕설을 한다(3.70%), 불펜이나 자 등으로 가혹행위를 했다(1.73%), 조서내용을 불리하게만 작성하였다(0.99%)
N (405)		102	60	86	26	53	58	43	129	
% (100)		25.19	14.81	21.23	6.42	13.09	14.32	10.62	31.85	

좀더 구체적으로 인권침해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검찰청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느냐에 대해 질문하였다. < 표 19 >에서 보듯이 95명의 소년(23.46%)이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경찰에서의 61% 보다는 현저히 적은 것이지만,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19 > 검찰청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 여부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95	219	75	16
% (100)	23.46	54.07	18.52	3.95

검찰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은 < 표 20 >에 나타난 것과 같다. 불공평한 차별대우,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한 응답자가 각각 11.60%, 12.56%인데 이것만으로는 바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명백하게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 폭언, 구타, 협박 등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21.98%, 12.10%, 9.38%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경찰에서 보다는 인권침해사례가 낮지만, 여전히 약 20%의 소년들이 검찰단계에서도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표 20 > 검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

인원 \ 내용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한 차별대우	비인간적 대우	기타	무응답	기타(22.22%) : 나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음(7.16%), 검사의 의견대로 함(2.96%), 협박으로 진술을 강요함(8.64%)
N (405)	38	49	89	47	51	90	138	
% (100)	9.38	12.10	21.98	11.60	12.56	22.22	34.07	

검찰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은 검찰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라고 한 설문에 대한 학생들의 대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표 21 >에서 보듯이 폭언이나 협박, 구타를 하지 말아달라고 한 학생이 각각 82명(20.25%), 79명(19.51%)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검찰조사과정에서 소년 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 표 21 > 검찰조사나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인원 \ 내용	구타하지 말아 주세요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말아 주세요	조사를 공평하고 정확하게 해 주세요	진술의 기회를 주세요	불신만으 로 수사를 하지 말아 주세요	기타	무응답	기타(5.68%) :과장된 조사를 하지 말아 주세요(2.26%), 죄인취급을 하지말아 주세요(1.73%)
N (405)	79	82	66	64	42	23	49	
% (100)	19.51	20.25	16.30	15.80	10.37	5.68	12.10	

4.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서 인권침해의 유형

(1) 일반적 사항

< 표 22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조사대상 소년원생 405명 중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소년은 169명으로서 전체 응답자의 41.73%에 이르렀다.

< 표 22 >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받은 경험 여부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무응답
N (405)	169	209	27
% (100)	41.73	51.60	6.67

선도조건부기소유예를 받았던 소년들이 그에 대해 만족하는가에 대한 것은 < 표 23 >에 나와 있다. 대답한 학생 중 62.13%의 학생이 만족한다고 하여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에 비해 만족도가 훨씬 높은 반면 불만인 비율은 낮았다.

< 표 23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한 만족여부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N (196)	105	30	32	29
% (100)	62.13	17.75	18.93	17.16

(2) 인권침해유형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응답자들의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 표 24 >에 나와 있다. 내 생각을 무시한다, 사회에 적용을 못한다 등의 이유를 제기한 응답자도 있지만, 폭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49%, 구타라고 응답한 비율이 14.79%인데 결국 응답자의 약 40% 정도가 폭언이나 구타 형태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표 24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한 불만족 이유

인원 \ 이유	내 생각을 무시한다.	사회에 잘 적용을 못한다	선도선생님의 구타	폭언	무응답
N (196)	34	47	25	38	52
% (100)	20.12	27.81	14.79	22.49	30.77

< 표 25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도위원들에게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없는가라는 좀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196명 중 15명(8.88%)만이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일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147명(86.98%)는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 표 25 > 선도위원들에게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여부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N (196)	15	147	22	12
% (100)	8.88	86.98	13.02	7.10

< 표 26 >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선도위원들에게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타, 폭언, 협박이라고 대답한 소년이 각각 21명(12.43%), 17명(10.06%), 16명(9.47%)이다. 이 대답에 의하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소년의 약 1% 정도가 구타, 협박,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소년들이 선도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 표 27 >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 표 26 > 선도위원들에게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

인원 \ 내용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비인간적 대우	기타	무응답	기타(29.59%) : 무시하는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10.20%) 모욕적인 말을 한다(5.10%)
N (196)	16	21	17	14	50	81	
% (100)	9.47	12.43	10.06	8.28	29.59	47.93	

< 표 27 > 선도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인원 \ 내용	친절하게 선도해 주세요	사람들의 생활 형태를 잘 파악해 주세요	상담을 잘 해주었으면 합니다	인격적인 대우를 해 주세요	무응답
N (196)	46	38	33	19	60
% (100)	27.22	22.49	19.53	11.24	35.50

5.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인권침해유형

(1) 일반적 사항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363명(89.63%)의 소년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수용된 적이 없다고 한 소년은 35명(8.64%)이어서 소년원에 수용생들의 대부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8 >)

< 표 28 >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경험 유무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무응답
N (405)	363	35	7
% (100)	89.63	8.64	1.73

< 표 29 >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만족한다고 대답한 소년이 114명(30.81%), 불만이라고 대답한 소년이 106명(28.65%)였다.

< 표 29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370)	114	106	123	18	9
% (100)	30.81	28.65	33.24	4.86	2.43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25.14%인 반면, 불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34.86%에 이르고 있다(< 표 30 >)

< 표 30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370)	93	129	127	10	11
% (100)	25.14	34.86	34.32	2.70	2.97

(2) 인권침해유형

< 표 31 >과 < 표 32 >는 각각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과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대해 불만이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소년들의 대답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 표 31 >에서 ‘일과표대로의 생활을 하지 못했다’,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등 반드시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말할 수 없는 불만사항들도 있었지만, ‘먹는 것이 부족했다’, ‘필요이상으로 오래 가두어 두었다’는 응답한 소년이 각각 46명(12.43%), 51명(13.78%)에 이르렀다. 구타가 심하다(4.05%),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7.84%)는 응답은 명백히 인권침해를 당한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 수용생들 10명 중 적어도 한 명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 표 31 >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대한 불만이유

인원	이유	먹는 것이 너무 부족했다	일과표대로의 생활을 하지 못했다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래 가두어 두었다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기타	무응답	기타(20.81%) : 구타가 심하다(4.05%),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자주 한다(7.84%) 운동 부족(1.89%)
N (370)		46	45	55	53	51	35	77	40	
% (100)		12.43	12.16	14.86	14.32	13.78	9.46	20.81	10.81	

< 표 32 >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대한 불만족 이유

인원	이유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너무 무섭게 대했다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기타	무응답
N (370)		81	59	78	43	90	48
% (100)		21.89	15.95	21.08	11.62	24.32	12.97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 표 33 >과 같다.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83명(22.43%)으로서 경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한 소년(248명)에 비해

월등히 적고 검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한 소년(95명)과 비슷하였다.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은 227명(61.35%)로서 경찰에서 보다는 훨씬 적고 검찰에서와 비슷하였다.

< 표 33 >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의 여부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N (370)	83	227	52	8
% (100)	22.43	61.35	14.05	2.16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은 < 표 34 >에 나와 있다. 370명의 소년 중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구타, 폭언, 협박이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각각 18.38%, 18.11%, 4.32%에 이르고 있다. 이는 < 표 35 >의 소년들이 소년분류심사원에 하고 싶은 이야기 중, 구타나 폭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응답한 소년들의 비율이 각각 14.59%, 25.41%에 이르는 것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 표 34 >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

인원 \ 내용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불공평한 차별대우	비인간적 대우	기타	무응답	기타(23.78%) :충분하지 않은 조사(7.84%), 내의견을 무시함(8.92%)
N (370)	16	68	67	30	45	88	82	
% (100)	4.32	18.38	18.11	8.11	12.16	23.78	22.16	

< 표 35 > 소년분류심사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인원 \ 내용	구타하지 말아주세요	폭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심사에 신중을 기울여주세요	인간적인 대우를 해주세요	기타	무응답	기타(4.86%) :차별대우(2.43%), 차별정도가 심하다(1.08%).
N (370)	54	94	58	65	18	81	
% (100)	14.59	25.41	15.68	17.57	4.86	21.89	

6. 재판단계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1) 일반적 사항

소년법 제24조 제1항은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년사건의 재판이 과연 소년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 표 36 >에 나와있다. 그렇다고 응답한 소년은 20%이지만, 아니라고 응답한 소년은 34.32%에 이르러 그렇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는 재판단계에서도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있을 가능성을 암시해주고 있다.

< 표 36 > 심리가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인원 \ 정도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81	139	118	46	21
% (100)	20.00	34.32	29.14	11.36	5.19

본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에 만족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 표 37 >에 나와있다.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1.48%인데 비해,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은 46.17%로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이 만족한다고 응답한 소년의 2배를 넘는다.

< 표 37 > 재판결과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87	187	89	34	8
% (100)	21.48	46.17	21.98	8.40	1.98

< 표 38 >은 재판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소년들이 제시한 불만족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판사가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31.60%에 이르는데 이는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한

7.16%의 소년들을 고려할 때 재판과정에서 소년의 정당한 진술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38 >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이유

인원 \ 이유	판사가 본인의 생각을 잘 어주지 않았다	너무나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같이 재판받은 다른 공범친구 보다 차별대우를 받았다	기타	무응답	기타(29.38%)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7.16%), 비인간적인 대우를 한다(7.41%), 심한 처분을 내린다(3.70%)
N (405)	128	126	78	77	119	
% (100)	31.60	31.11	19.26	19.01	29.38	

(2) 인권침해유형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여부나 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응답은 < 표 39 >와 같다.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54.07%(405명 중 219명)였으나 있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도 27.16%(1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찰(61.23%)에서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검찰(23.46%) 및 소년분류심사원(22.43%)에서와는 비슷하고, 선도위원(8.88%) 보다는 높은 것이다.

< 표 39 >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 여부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110	219	59	17
% (100)	27.16	54.07	14.57	4.20

재판과정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예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 표 40 >에 나와 있다.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는 폭언이나 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소년 7.41%에 이르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죄가 없는데 유죄라고 했다’, ‘나를 위해 충분히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각각 26.17%, 5.19%, 15.0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재판에 대한 소년들의 불만은 < 표 41 >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류심사만으로 판단하지 말라',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 '진술할 기회를 달라', '인격적으로 대해달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각각 8.64%, 13.33%, 11.60%, 9.38%에 이르고 있다. 이는 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40 > 재판과정에서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내용

인원	내용	폭언 이나 폭행	하고 싶은 말을 못하 게 했다	비인 간적 인 대우 를 받았 다	죄가 없는 데 유죄 라고 했다	너무 나 무거 운 처분 을 받았 다	함께 재판 받는 친구 들에 비해 불공 평한 대접 을 받았 다	나를 위해 충분 히 변호 해 줄 사람 이 없었 다	기타	무응답	기타(18.02%) :진술 할 기회도 주지 않는다(6.42%), 이해 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4.20%), 처음인데도 너무 심한 처분을 하였다(4.69%)
N (405)		30	106	16	21	73	45	61	73	150	
% (100)		7.41	26.17	3.95	5.19	18.02	11.11	15.06	18.02	37.04	

< 표 41 > 판사나 법원직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인원	내용	서류심사만 으로 판단을 하지 말아 주세요	자신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아 주세요	차별대우 없는 공정한 재판을 해주세요	지나친 처벌을 내리지 말아 주세요	진술할 기회를 주세요	인격적으 로 대해주세 요	무응답
N (405)		35	97	54	27	47	38	107
% (100)		8.64	23.95	13.33	6.67	11.60	9.38	26.42

7. 보호관찰에서의 인권침해 유형

(1) 일반적 사항

< 표 42 >, < 표 43 >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한 소년 405명 중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은 278명(68.64%)였다. 보호관찰기간에 대해 응답한 소년들 305명 의 보호관찰기간은 6개월 이하가 57명(18.69%) 6개월~1년이 56명(18.36%), 1년~1년 6개월이 67명(21.97%), 1년 6개월~ 2년이 94명(30.82%), 2년 이상은 31명(10.16%)이었다.

< 표 42 >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 여부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무응답
N (405)	278	100	27
% (100)	68.64	24.69	6.67

< 표 43 > 보호관찰기간

인원 \ 기간	6개월 이하	6개월~1년	1년~1년 6개월	1년 6개월~ 2년	2년 이상
N (305)	57	56	67	94	31
% (100)	18.69	18.36	21.97	30.82	10.16

보호관찰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소년은 122명(40.0%),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은 98명(32.13%)였다. 이는 경찰에서의 조사, 검찰에서의 조사, 법원의 재판에 대한 만족도 보다 높은 것이지만, 선도 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한 만족도(62.13%)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 표 44 > 보호관찰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305)	122	98	69	12	4
% (100)	40.00	32.13	22.62	2.95	1.31

(2) 인권침해 유형

보호관찰에 불만인 소년들의 경우 그 이유는 < 표 45 >에서와 같다. ‘너무 형식적이다’, ‘내 생각을 너무 무시한다’와 같이 그 자체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들을 지적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소년이 보호관찰대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함으로써 자신의 명예가 침해될 것을 우려하는 소년의 비율이 5.57%에 이른 것은 주목할만한 일로서 보호관찰에서 소년의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 표 45 > 보호관찰에 불만족인 이유

인원 \ 이유	너무 형식적이다	내 생각을 너무 무시한다.	너무 간섭이 심하다	내가 보호관찰대상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였다	기타	무응답	기타(21.31%) :보호관찰소가 너무 멀다(5.90%), 너무 무섭다(1.31%), 직장에서 일하는 시간 외에 보호관찰을 받고 싶다(1.31%), 형사처럼 심문한다(1.64%) 시간이 너무 길다(2.95%)
N (305)	54	40	57	17	65	92	
% (100)	17.70	13.11	18.69	5.57	21.31	30.16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좀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해 있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은 18.03%(55명)이고, 없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은 72.46%(221명)이었다. 이는 경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61.23%)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검찰

청(23.46%), 소년분류심사원(22.43%), 법원이나 재판과정(27.16%)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 보다는 약간 낮지만, 선도위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비율(8.88%)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 표 46 > 보호관찰 중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여부

인원 \ 사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N (305)	55	221	29
% (100)	18.03	72.46	9.51

< 표 47 >에 의하면,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폭언, 구타, 협박이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각각 8.85%, 7.54%, 5.25%이다. 이는 보호관찰에서도 우려할만한 인권침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 표 48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호관찰소년들의 41.32%가 보호관찰직원에게 폭언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한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표 47 >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

인원 \ 내용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불공평한 차별대우	비인간적 대우	기타	무응답	기타(24.59%) : 지나치게 사생활에 간섭한다(12.13%), 내 말을 믿지 않는다(2.95%)
N (305)	16	23	27	21	20	75	134	
% (100)	5.25	7.54	8.85	6.89	6.56	24.59	43.93	

< 표 47 > 보호관찰직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인원 \ 내용	사적문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주세요	폭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무응답	기타(14.75%) : 비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정정해 주세요(3.93%), 친절하게 대해주세요(5.57%), 너무 강압적이다(1.97%).
N (305)	45	58	126	45	31	
% (100)	14.75	19.02	41.32	14.75	10.16	

8. 소년원에서의 인권침해유형

(1) 일반적 사항

설문에 응답한 소년들이 소년원에서 생활한 기간은 < 표 48 >과 같다. 1개월 이하가 58명(14.32%), 1개월~3개월이 89명(21.98%), 3개월~6개월이 77명(19.01%), 6개월~1년이 78명(19.26%), 1년~2년이 89명(21.98%)이었다.

< 표 48 > 소년원수용기간

인원 \ 기간	1개월 이하	1개월 ~3개월	3개월 ~6개월	6개월 ~ 1년	1년 ~ 2년	무응답
N (405)	58	89	77	78	89	14
% (100)	14.32	21.98	19.01	19.26	21.98	3.46

소년원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38.52%,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20.49%이었다(< 표 49 >).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은 경찰(64.94%)이나 검찰의 조사(32.59%),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28.65%), 보호관찰(32.13%)에 대한 불만 보다는 낮은 것이었지만, 선도조건부기소유예(17.75%)에 대한 불만 보다는 높은 것이다.

< 표 49 > 소년원생활에 대한 만족도

인원 \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156	83	131	27	8
% (100)	38.52	20.49	32.35	6.67	1.98

소년원생활에 불만이 있다면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 표 50 >과 같다. 이 중 ‘먹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18.27%,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8.64%, 일과표가 너무 힘들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6.67%이다. 이러한 응답만으로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행해진다고 할 수 없지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 표 50 > 소년원생활에 대한 불만의 이유

인원 이유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한다	제대로 감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다	먹는 것이 너무 족하다	일과표가 너무 힘들다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기타	무응답	기타(20.00%) :체육시간이 부족하다(6.17%), 간식 같은 것들이 너무 부족하다(4.44%), 친구들에게 편지를 못 쓰게 한다(2.22%), 선생님들이 너무 때린다(3.21%)
N (405)	40	28	74	27	35	81	175	
% (100)	9.88	6.91	18.27	6.67	8.64	20.00	43.21	

소년원에서의 직업교육, 컴퓨터 및 영어회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 표 51 > 및 < 표 52 >에 나와 있다. 직업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34.32%이고,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은 15.06%이다.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은 34.81%,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은 15.55%로서, 직업교육이나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 표 51 > 직업교육에 대한 만족도

인원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139	61	131	52	22
% (100)	34.32	15.06	32.35	12.84	5.43

< 표 52 >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에 대한 만족도

인원 정도	만족한다	불만이다	보통이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141	63	126	55	20
% (100)	34.81	15.55	31.11	13.58	4.94

소년원생들이 직업교육,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 표 53 > 및 < 표 54 >에 나와있다. 직업교육과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각각 10.62%, 7.40%인데, 이를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년들은 적성에 맞지 않는 교육을 강요받고 있다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힘들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이 7.41%인데 이 역시 의사에 반하는 교육이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다.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를 호소한 소년의 비율은 각각 4.10%와 13.09%인데, 영어회화 및 컴퓨터 교육에서 차별대우를 호소한 소년의 비율이 높다는 것 역시 동교육이 학생들의 능력이나 의사에 반해서 행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 표 55 >에서 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체육활동과 음악·미술 등의 특기활동이라고 응답한 데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이나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이 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 표 55 >에서 보듯이 소년들이 컴퓨터교육이나 자격증취득 등에 만족하고 있고, 어차피 직업교육등 모든 교육은 피교육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 표 53 > 직업교육에 불만인 이유

이유 인원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너무 형식적이 다	일반 학과공부 를 더 많이 하고 싶다	너무 힘들다	다른 학생과 의 차별대 우 때문에	기타	무응 답	기타(26.67%) : 다른 것들을 배웠으면 한다(6.66%), 인터넷을 못하게 한다(8.40%), 컴퓨터를 자세하게 배우지 못한다(2.22%)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하는 일 없이 앉아 있기만 한다(1.73%)
N (405)	43	52	20	30	17	108	170	
% (100)	10.62	12.84	4.94	7.41	4.10	26.67	41.98	

< 표 54 > 영어회화 및 컴퓨터교육에 불만인 이유

인원 \ 이유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너무 형식적이다	일반 학과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기타	무응답	기타(13.09%) :인터넷 사용을 못하게 한다(6.91%), 컴퓨터를 잘 못배움(1.98%),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별 소용이 없다(1.23%)
N (405)	30	53	26	59	53	184	
% (100)	7.40	13.09	6.42	14.57	13.09	45.43	

< 표 55 > 소년원에서의 활동 중 가장 좋아하는 활동

인원 \ 내용	체육 활동	컴퓨터 교육	검정고시 준비	자격증 취득	음악·미술 등의 특기활동	기타	무응답	기타(9.63%) :상담시간(3.70%),종교시간(1.23%),비디오 시청(1.48%),시설 환경(0.99%) 등.
N (405)	96	79	45	62	55	39	29	
% (100)	23.70	19.51	11.11	15.31	13.58	9.63	7.16	

(2) 인권침해의 유형

이상의 질문들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이 글의 목적은 인권침해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만사항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권침해의 유형을 파악하도록 하는 데에 좀더 의미가 있다.

소년원생들에게 소년원생활에서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을 제시하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은 < 표 56 >과 같다.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인 구타, 폭언을 제시한 소년의 비율이 각각 17.78%, 12.84%인데, 이는 아직도 소년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징계·처벌의 정도가 심하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도 8.64%에 이르고 있는데, 이 역시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년원에서의 인권침해는 직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생들 상호간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은 9.14%의 소년들이 학생들 상호간의 구타를 제시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 표 56 > 소년원생활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인원 내용	폭언	구타	징계·처 별 정도가 심하다	예절교 육	학생들 간의 구타	기타	무응답	기타(16.54%) :일정과는 다른 수업시간(3.70%), 형식적인 수업(2.47%), 컴퓨터 수업시간이 충분하지 못함(7.41%), 엄한규율(1.23%)
N (405)	52	72	35	34	37	67	108	
% (100)	12.84	17.78	8.64	8.40	9.14	16.54	26.67	

소년원생활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가라는 좀더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응답은 < 표 57 >과 같다. 13.33%의 소년(54명)이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4.69%의 소년들은 당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당한 적이 있다고 한 소년의 비율은 경찰(61.23%), 검찰청(23.46%), 소년분류심사원(22.43%), 법원이나 재판과정(27.16%), 보호관찰(18.03%)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 보다는 약간 낮지만, 선도위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고 응답한 비율(8.88%)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 표 57 > 소년원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는지 여부

인원 사실	있다	없다	모르겠다	무응답
N (405)	54	262	55	34
% (100)	13.33	64.69	13.58	8.40

소년원에서 소년들이 당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은 < 표 58 >과 같다. 구타, 폭언, 협박과 같은 명백한 인권침해를 당한 소년의 비율이 각각 13.58%, 8.40%, 3.95%에 이르고 있다. 기타의 응답 중 공업용 파이프 같은 몽둥이(또는 당구큐대)로 때린다(6.17%), 특정 선생님의 성적 학대(.074) 등도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권침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차별대우, 비인간적인 대우라고 응답한 소년의 비율도 각각 7.41%, 4.69%에 이르고 있다. 기타의 응답 중 선생님들이 너무 무섭다(6.42%),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2.22%), 차별이 너무 심하다(6.17%) 등도 인권침해적 요소를 다분히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직원들이 아닌 다른 원생들에 의한

인권침해를 호소한 학생도 3.46%에 달한다.

소년원생들이 소년원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한 < 표 59 >에서도 15.31% 및 28.15%의 소년들이 차별대우와 폭언을 하지 말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소년원에서 상당수의 원생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표 58 >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의 구체적 내용

인원 내용	협박	구타	욕이나 폭언	불공 평한 차별 대우	다른 학생 들로 부터 괴롭 힘을 당했 다	비인 간적 대우	기타	무응답	기타(24.94%) :공업용 파이프 같은 몽둥이(또는 당구큐대)로 때린다(6.17%), 선생님들이 너무 무섭다(6.42%), 화장실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2.22%), 처벌이 너무 심하다(6.17%), 특정 선생님의 성적 학대(0.74)
N (405)	16	55	34	30	14	19	101	194	
% (100)	3.95	13.58	8.40	7.41	3.46	4.69	24.94	47.90	

< 표 59 > 소년원에 하고 싶은 말

인원 내용	차별대우 가 없었으면 합니다	폭언을 하지 말아 주세요	충분한 시간의 컴퓨터 교육을 희망합니다	기타	무응답	기타(14.57%) :정신교육 시간을 줄여주세요(3.95%), 인격적인 대우를 주세요(6.17%), 처벌이나 징계의 정도를 줄여주세요(4.20%)
N (405)	62	114	58	59	112	
% (100)	15.31	28.15	14.32	14.57	27.65	

9. 소년사법절차 이후단계에서의 인권침해

비행소년이나 범죄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는 소년사법절차에서만이 아니라 소년사법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사회에서의 낙인이나 주변환경들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소년사법절차에서 해방된 소년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소개하기로 한다.

< 표 60 >과 < 표 61 >은 자신들이 사회로 나아갔을 때에 우려되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을 정리하여 놓은 것이다. 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갔을 때에 걱정하는 것은 학교문제, 직장문제, 친구문제, 가정문제, 재범우려의 순이었다. 또 자신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보호시설 수용의 경험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이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15.31%였다. 이는 소년법 제32조 제5항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들이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년들의 우려는 < 표 62 >에서 보듯이 “사회에 나갔을 때, 어른들에 대하여 꼭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만 적어 주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인격적인 대우와 이해, 자신들에 대한 선입견 배제라고 응답한 소년들의 비율이 각각 26.91%, 15.31%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 표 60 > 사회로 나아갔을 때에 걱정되는 문제

인원 \ 내용	학교문제	가정문제	친구문제	다시 나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직장문제	기타	무응답
N (405)	125	95	115	85	122	37	35
% (100)	30.85	23.46	28.40	20.99	30.12	9.14	8.64

< 표 61 > 사회에서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

인원 내용	친구	취업문제	가정문제	보호시설 수용의 경험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	재범에 대한 사회 환경적 유혹	기타	무응답	기타(8.64%) :약물에 대한 유혹(3.95%),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 부족(1.98%), 보호관찰(1.2 3%)
N (405)	107	66	72	62	54	35	9	
% (100)	26.42	16.30	17.78	15.31	13.33	8.64	2.22	

< 표 62 > 사회에 나아갔을 때 어른들에게 바라는 사항

인원 내용	보다 많은 관 심을 가져 주 세요	바르고 참된 어른의 모습을 보여 주세요	인격적인 대우 와 이해를 해 주세요	선입견을 갖지 말고 대해 주 세요	무응답
N (405)	68	79	109	84	65
% (100)	16.79	19.51	26.91	20.74	16.05

10. 설문결과와 종합정리

이상 서울소년원과 춘천소년원생 4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다 음과 같이 종합정리할 수 있다. 소년원생들은 소년사법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부모나 학교의 선생님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고, 인 권침해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폭언, 구타, 협박 및 차별대우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소년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소년들에게 폭언, 구타, 협박, 차별대우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년들을

구타, 협박하는 데에 볼펜, 자, 파이프같은 몽둥이, 당구큐대 등의 도구들이 사용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폭언이나 협박 등은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년들을 구타하는 것은 폭행죄에 해당하고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려울 것이다.

폭언, 구타, 협박 등을 호소하는 소년원생들의 비율도 결코 적지 않다. 소년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거의 10% 이상의 소년들이 폭언, 협박, 구타 등을 호소하고 있다면, 이는 이러한 행위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상황은 소년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할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입법적, 행정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V. 결 어

이 글의 목적은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청소년·어린이 인권침해유형을 알아내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하나는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제도 그 자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그 개선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글 III.은 전자의 입장이고 여기에서는 법이론적, 비교법적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글 IV.는 후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서는 소년원생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후자의 입장에 따른 실증적 조사 결과, 소년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소년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폭언, 구타, 협박, 차별대우와 같은 인권침해유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법상 범죄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하게 행해지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도 폭언은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나 제260조의 폭행죄 또는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구타는 제260조의 폭행죄, 제257조의 상해죄, 제262조의 폭행치상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협박은 협박죄나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조각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응한 소년원생들 중 상당수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소년사법절차 모든 단계에서 폭언, 협박, 구타, 차별대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법상으로도 범죄로 규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형벌도 가볍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폭언, 구타, 협박 등을 가중처벌하는 형태의 개선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방안 보다는 예를 들어 소년에 대해 존대말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폭언, 구타, 협박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들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첫째, 구타, 협박, 강요, 폭언 등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둘째, 이러한 행위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행정적, 인적, 시설적 요인들을 규명해야 하고, 셋째, 이러한 행위들을 감소시키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소년사법절차에서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첫째, 소년사법절차의 대상과 관련하여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이 아니라 행정적 복지처분을 과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준연령을 좀더 명백하게 규정해야 한다. 우범소년이나 촉법소년의 보호처분대상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은 찬반양론이 있지만, 소년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복지처분을 과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헌들 중 부분적으로 이를 언급한 것들은 있지만, 본격적으로 이러한 주제를 다룬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처우의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단계에서는 훈방등과 같이 소년을 사법절차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다양한 다이버전(diversion) 수단과 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훈방은 실무상으로는 널리 행해지고 있지만, 법령상의 근거가 불명확하다. 소년의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는 훈방의 근거, 기준, 절차 등을 명백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문헌들 중 훈방의 문제점과 필요성 등을 부분적으로 다룬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것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경찰훈방의 합리화방안”등과 같은 제목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검찰단계에서는 검사선의주의에서 법원선의주의로의 전환하는 방안과, 선도조건부기소유예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검사선의주의로 인해 대상소년은 중복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검사는 보호 보다는 처벌위주의 사고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년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다. 따라서 법원선의주의로 바꾸어 절차의 중복과 처벌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로부터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선도조건부기소유예의 경우에도 법령상의 근거없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의 근거, 기준, 구체적 절차, 불복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소년들이 검사 또는 선도담당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할 위험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멘터프로그램과 같이 소년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법원의 재판단계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의 심판에서 진술거부권과 그 고지, 증거법칙,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국선보조인제도 등과 같은 적법절차의 보장, 조사제도의 활성화,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의 중복부과의 문제점 개선, 부정기형제도의 개선, 미결구금의 정비 및 형사보상의 마련 등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국친주의, 규문주의에 가까운 직권주의는 소년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할 위험성이 있고, 이는 그 자체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적법절차를 강조할 경우에는 소년사법이 성인사법과 동일해져서 소년사법에 인정되어 온 국친주의의 장점이 사라질 위험성이 있게 된다. 따라서 어느 범위에서 국친주의의 요구와 적법절차의 요구를 조화시킬 것인가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이를 언급한 문헌들이 있지만,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연구들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소년사법에서 국친주의와 적법절차의 조화”와 같은 제목의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형벌이나 보호처분의 집행단계에서는 민간위탁시설의 활성화, 소년원수용에 대한 명백한 법적 규정의 마련, 가석방·가퇴원에서 성인에 비해 소년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민간위탁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몇몇이 있었고, 기존의 연구들 중 소년의 미결수용, 가석방·가퇴원 등에 대해 이론적, 통계적 고찰을 한 연구들은 있지만, 개별사례들에서 어떤 요소들이 가석방, 가퇴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소년 미결수용의 이론적, 실무적 개선방안”,

“가석방, 가퇴원의 실제와 개선방안” 등과 같은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수행하는 방법 중에서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연구방법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도와 외국의 제도가 제도 그 자체로서도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하자는 식의 비교법적 연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제도 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용하는 사회적 여건, 운용자의 자질과 사고방식, 운용여건 등이 다른 경우 비교법적 연구는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을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우리의 제도와 운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구를 해야 하고, 외국과의 비교연구는 좀더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끝으로 소년사법절차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방지,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청소년보호 문제는 청소년의 성보호문제로만 편향되어 있는 감이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니라 성인들의 명령 또는 욕구에 순응하는 한에서만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소년들에 대해 행해지는 다양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년원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행해지는 소년에 대한 다양하고 일상적인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보호는 마땅히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에도 미쳐야 한다.

참 고 문 헌

1. 단행본

김준호/이순래, 소년수탁시설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오영근/최병각, 부정기형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_____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_____ , 소년사건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1995.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Struggle for Justice, New York: Hill and Wang, 1971

Aries, Philippe, Centuries of Childhood, New York : Knopf, 1962.

Johnston, Norman, Leonard Savitz & Marvin Wolfgang, eds., The Sociology of Punishment and Corre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0

Leisure, Burton M., Liberty, Justice and Morals: Contemporary Value Conflicts, New York: Macmillian, 1970

Shelley, Louise I., Crime and Modernization,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81.

Sykes, Greham M. & Robert K. Merton, Criminology, New York: Harcourt Brace, 1978

Zehr, Howard, Crime and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Totowa : Rowman and Littlefield, 1976.

2. 논문

- 강봉수, “소년법개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II - 소년사건 처리절차 -”,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 강영호, “소년심판절차상의 적법절차보장”, 청소년범죄연구, 제5집, 1987.
- 김보환, “소년법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 김일수, “소년법 인신구속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1985.
- 김양균, “소년법의 선도유예제도 : 선도조건부기소유예”, 검찰, 제70호, 1978. 6.
- 김찬돈, “우범소년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처리실태”, 재판과 판례, 제7집, 1998.
- 민학기,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년보호사건의 개선을 위한 회의결과 보고서, 법원행정처, 1997.
- _____, “소년보호제도의 개선방안”, 소년법연구, 창간호, 2002.
- 박재윤/김병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 한독간의 비교 연구”, 국민대학교 법학논총, 제9집, 1997.
- 박형남,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년법연구, 창간호, 2002.
- 백춘기,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의 비행사실”,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제62집), 법원행정처, 1993.
- 소순무, “각국의 소년법제와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제18집), 법원행정처, 1983.
- 송광섭/점승현, “우범소년의 우범사유와 우범성”, 한일형사법의 과제와 전망(수운이한교교수정년기념논문집), 1990.
- 신동운, “다이버전운동과 선도조건부기소유예”, 형사정책, 제2호, 1987.
- 신진규, “우범소년의 처리실태와 선도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5집, 1987.

- 심영희, “소년보호위탁을 위한 위탁단체 육성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4집, 1986.
- 안재영, “법원과 비행청소년의 사회복지기관 상호간의 협력”, 청소년범죄연구, 제2집, 1984.
- 안재정, “법원과 보호소년위탁기관과의 협력”, 청소년범죄연구, 제2집, 1984.
- 오선주, “소년법상 사회봉사명령제도와 문제점 :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관련하여”, 청주대 법학논집, 제12집, 1997.
- 오영근, “범죄인의 사회내처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8
- _____, “소년법 사법처리절차의 변천과정”, 현대법학의 이론 (이명구박사학위논문집) 제3권.
- _____, “사회봉사명령제도와 그 문제점”, 형사정책연구, 제2권 제3호(1991년 겨울호).
- _____,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6권 제4호, 1995. 12.
- 원혜옥, “소년법에 의한 보호관찰의 효율적인 운용방안 : 독일 소년법원법상의 보호처우”, 형사정책, 제10호(1998).
- 유숙영, “사회봉사명령제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유원석, “소년보호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의 준용”, 가정법원사건의 제문제(재판자료 제62집), 법원행정처, 1993.
- 유진식, “스웨덴의 소년사법제도”,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법무자료, 제113집), 법무부, 1989.
- _____, “소년조사관제도의 분석과 그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9집, 1991.
- 이상철, 판결전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 이진국, “독일 소년형법의 개혁에 관한 최근 논의”, 형사정책연구소식, 제73호(2002년 9/10월호).
- 이진우, “미국에 있어서의 부정기형”, 서울대학교 법학, 제3권(특별호), 1972.

- 이춘화, “소년사건에서의 조사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장중식, “부정기형에 관한 고찰”, 현대형사법론(익헌 박양빈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6.
- 점승현,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정동기, “사회봉사명령제도의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정진연, “소년법의 이념과 보조인의 역할”, 소년보호연구, 제4호, 2002.
- 조복전, “소년사법의 역사와 철학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4호, 2002.
- 조준현, “소년사법의 이념과 원리에 관한 소고”, 소년보호연구, 창간호, 1999.
- 酒井安行, “日本における少年法改革をめぐる最近の論議”, 소년법연구, 창간호.
- 차용석, “비행청소년선도를 위한 유관기관의 개요 및 상호협력에 관한 문제”, 청소년범죄연구, 제2집, 1984.
- 최병각, “소년심판대상의 연령기준”, 형사정책연구소식, 제60호.
- 최인섭, “소년구금제도의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9집, 1991.
- 최종식, “소년보호사건과 형사보상문제”, 소년보호연구, 제4호, 2002.
- 한상호, “현행소년심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법무자문위원논설집, 제5집, 1981.
- 荒木伸怡, “虞犯の概念とその機能”, 강원법학, 제3권, 1989.
- 横山 實, “日本における少年非行の動向と嚴罰化”, 소년법연구, 창간호.
- 홍경호, “법원과 소년보호단체와의 협력”, 청소년범죄연구, 제2집, 1984.
- Ferdinand, Theodore N., “Juvenile Delinquency or Juvenile Justice : Which Came First?”, Criminology 27(1), February, 1989.
- Martinson, Robert, “What Works?- The Martinson Report”, in Norman Johnston, Leonard Savitz & Marvin Wolfgang, eds., The Sociology of Punishment and Correc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1970
- Rosecrance, John, “Probation Supervision: Mission Impossible”, Federal

Probation, Vol. 50 No.1, 1986.

Schein, Edgar H., "Man Against Man: Brainwashing", Correctional Psychiatry and Journal of Social Therapy, Vol. 8, 1962.

소년사법절차에 대한 의식조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설문조사는 여러분들이 가정, 학교,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일이 없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계획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시는 설문은 여러분의 가정/학교/사회생활을 좀더 즐겁고 보람있게 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설문지는 무기명이어서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그 응답결과는 통계적으로 처리되므로 본인과 학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음 설문에 솔직하게 성의껏 답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 월 일

※학생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현재의 학교(소년원)에 들어오기 전까지의 학생과 부모님 또는 다니던 일반학교 선생님과 관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문항 1~10].

(선택 문항에 V로 표시해 주세요)

1. 학생의 연령은 얼마입니까?

- ① 12세
- ② 13세
- ③ 14세
- ④ 15세
- ⑤ 16세
- ⑥ 17세
- ⑦ 18세
- ⑧ 19세

2. 현재 학교(소년원)에 들어오기 전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는지요?

- ① 부모님 모두와
- ② 아버님과만
- ③ 어머님과만
- ④ 모두 안 계심
- ⑤ 기타()

3. 부모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4. 부모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용돈을 주지 않았다
- ② 공부만을 강요하였다
- ③ 부모로서 제대로 돌보아 주지 않았다
- ④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다
- ⑤ 본인의 생각을 항상 무시하였다
- ⑥ 기타()

5. 부모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

6. 이곳에 오기 전에 다니던 일반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7. 일반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다른 학생과 부당한 차별대우를 했다
- ② 공부만을 강요했다
- ③ 자주 때렸다
- ④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자주 했다
- ⑤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 ⑥ 기타()

8. 일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9. 일반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폭언
- ② 폭행이나 협박
- ③ 심한 체벌
- ④ 비인간적인 대우
- ⑤ 나를 항상 무시하였다
- ⑥ 다른 학생과 차별해서 대했다
- ⑦ 기타()

10. 일반 학교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

※학생은 현재의 학교(소년원)에 들어오기 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혹시 억울한 일이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문항 11 ~ 16].

11.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장에서 체포되어
- ② 피해자의 고소로
- ③ 다른 사람의 신고로
- ④ 함께 범행한 친구의 자백으로
- ⑤ 기타()

12. 경찰에서의 조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13. 경찰의 조사에 대해 불만이라면 왜 그런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 ② 자백을 강요당했다
- ③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 ④ 가족을 못 만나게 했다
- ⑤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⑥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 ⑦ 너무 무섭게 대했기 때문에
- ⑧ 기타()

14.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15. 경찰관에게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협박
- ② 구타

- ② 구타
- ③ 욕이나 폭언
- ④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한 차별대우
- ⑤ 비인간적인 대우
- ⑥ 기타()

2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받은 적이 없는 학생은 바로 27번으로 가세요).

2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해 만족하나요?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2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에 불만이라면 왜 그런가요?

()

24. 선도위원들에게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25. 선도위원들에게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면 무엇이었나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협박
- ② 구타
- ③ 욕이나 폭언
- ④ 비인간적인 대우
- ⑤ 기타 ()

26. 선도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

27. 학생을 조사한 검사나 검찰직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

※학생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학생 중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되어 있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재판과정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문항 28~41].

28.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수용된 적이 없는 학생은 바로 36번으로 가세요).

29.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는지요?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30.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생활이 불만이라면 왜 그런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먹는 것이 너무 부족했다
- ② 일과표대로의 생활을 하지 못했다
- ③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 ④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 ⑤ 필요 이상으로 너무 오래 가두어 두었다
- ⑥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 ⑦ 기타()

31.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또는 조사에 만족하는지요?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32.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 또는 조사가 불만이라면 왜 그런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 ② 너무 무섭게 대했다
- ③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 ④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았다
- ⑤ 기타()

33.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요?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34.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것인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협박
- ② 구타
- ③ 욕이나 폭언
- ④ 불공평한 차별대우
- ⑤ 비인간적인 대우
- ⑥ 기타 ()

35. 소년분류심사원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

36. 법원에서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되었습니까?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37. 본인에 대한 법원에서의 재판결과에 만족하나요?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38. 재판결과에 불만이라면 왜 그런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판사가 본인의 생각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 ② 너무나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 ③ 같이 재판받은 다른 공범 친구보다 차별대우를 받았다
- ④ 기타()

39. 법원이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40. 법원이나 재판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면 어떤 것이었나요?

(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폭행이나 폭언을 당했다
- ②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했다
- ③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
- ④ 죄가 없는데 유죄라고 했다
- ⑤ 너무나 무거운 처분을 받았다
- ⑥ 함께 재판받는 친구들에 비해 불공평한 대접을 받았다
- ⑦ 나를 위해 충분히 변호해 줄 사람이 없었다
- ⑧ 기타()

41. 판사나 법원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

※학생들 중에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혹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문항 42 ~ 48].

42. 학생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은 49번 문항으로 바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43. 보호관찰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얼마였습니까?

- ① 6개월 이하
- ② 6개월 - 1년
- ③ 1년 - 1년 6개월
- ④ 1년 6개월 - 2년
- ⑤ 2년 이상

44. 그 보호관찰에 만족하나요?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45. 그 보호관찰에 불만이라면 왜 그런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너무 형식적이다
- ② 내 생각을 너무 무시한다
- ③ 너무 간섭이 심하다
- ④ 내가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
- ⑤ 기타()

46.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47.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협박
- ② 구타
- ③ 욕이나 폭언
- ④ 불공평한 차별대우
- ⑤ 비인간적인 대우
- ⑥ 기타()

48. 보호관찰직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 학생의 현재의 학교(소년원)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문항 49~60].

49. 현재의 학교에서 생활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① 1개월 이하
- ② 1개월 - 3개월
- ③ 3개월 - 6개월
- ④ 6개월 - 1년
- ⑤ 1년 - 2년

50. 현재의 학교에서의 생활에 만족합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51. 현재의 학교에서의 생활이 불만이라면 왜 그런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선생님이 너무 무섭게 한다
- ② 제대로 감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다
- ③ 먹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 ④ 일과표가 너무 힘들다
- ⑤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 ⑥ 기타()

52. 현재의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해 만족합니까?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53. 현재의 학교에서의 직업교육에 불만이라면 왜 그런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 ② 너무 형식적이다
- ③ 일반 학과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 ④ 너무 힘들다
- ⑤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 ⑥ 기타()

54. 현재의 학교에서의 컴퓨터와 영어회화 교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어떤지요?

- ① 만족한다
- ② 불만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모르겠다

55. 컴퓨터와 영어회화 교육이 불만이라면 왜 그런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내 적성에 맞지 않는다
- ② 너무 형식적이다
- ③ 일반 학과공부를 더 많이 하고 싶다
- ④ 다른 학생과의 차별대우 때문에
- ⑤ 기타()

56. 현재의 학교생활 가운데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57. 현재의 학교생활 가운데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

58. 현재의 학교생활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 ① 있다
- ② 없다
- ③ 모르겠다

59.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협박
- ② 구타
- ③ 욕이나 폭언
- ④ 불공평한 차별대우
- ⑤ 다른 학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 ⑥ 비인간적인 대우
- ⑦ 기타 ()

60. 현재 학교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단히 적어주세요.

()

※여러분은 얼마 있지 않아 현재의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 여러분이 고민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문항 61~63].

61. 현재의 학교에서 사회로 나갈 경우 본인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2개 이상도 선택 가능)

- ① 학교문제
- ② 가정문제
- ③ 친구문제
- ④ 다시 나쁜 짓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 ⑤ 직장문제
- ⑥ 기타()

62. 사회에 나갔을 때,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훼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

63. 사회에 나갔을 때, 어른들에 대하여 꼭 하고 싶은 말 한 가지만 적어 주세요.

()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